

발간등록번호

11-1270000-000530-13

#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

The 4<sup>th</sup>  
Master Plan for Immigration Policy

2023  
-  
2027





##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

The 4<sup>th</sup>  
Master Plan for Immigration Policy

# 목 차

## Contents

### Part 01

#### 총 론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「외국인정책 기본계획」의 의의 .....  | 6  |
| II. 기본계획 수립의 연혁 및 평가 ..... | 10 |
| III.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 .....  | 24 |
| IV. 비전 및 정책목표 .....        | 39 |
| V. 제4차 기본계획의 차별성 .....     | 40 |

### Part 02

#### 주요 추진과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.....       | 44 |
| II.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.....        | 58 |
| III.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.....      | 64 |
| IV.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.....   | 72 |
| V.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..... | 77 |

### Part 03

#### 부 록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.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..... | 88  |
| 2. 재원 투자 규모 .....      | 100 |
| 3.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.....  | 102 |



Part  
01

# 총론

- I. 「외국인정책 기본계획」의 의의
- II. 기본계획 수립의 연혁 및 평가
- III.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
- IV. 비전 및 정책목표
- V. 제4차 기본계획의 차별성



# I 「외국인정책 기본계획」의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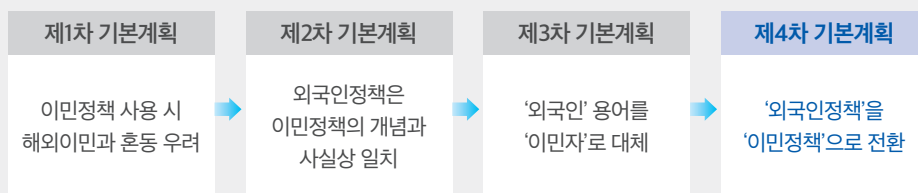
## 01 외국인정책의 의의

- 외국인정책은 국경·출입국 및 체류 관리, 사회통합과 국적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(Immigration Policy)을 의미
  -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,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

### ❌ '외국인정책'과 '이민정책' 용어의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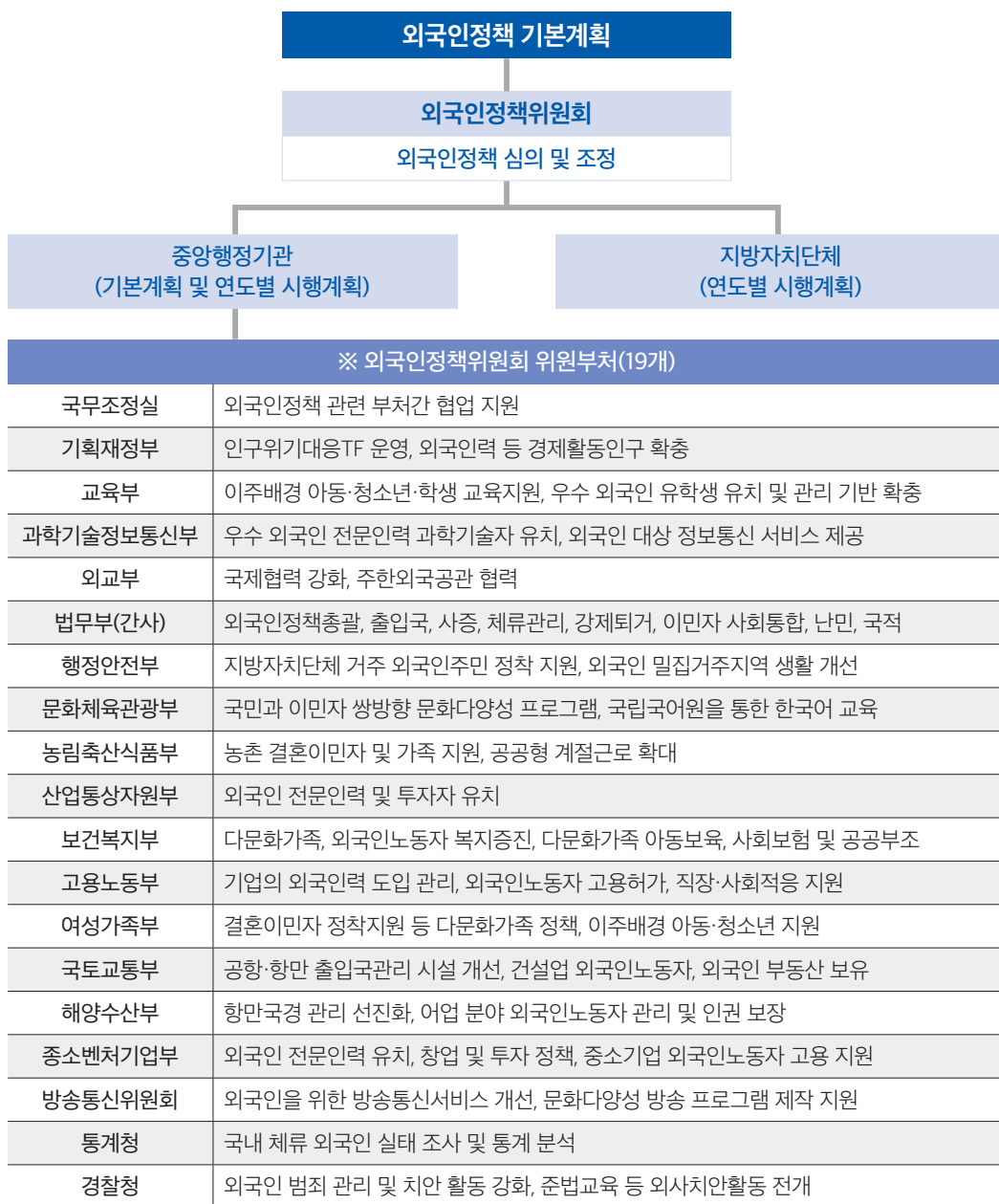
-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민들이 '이민'이라는 용어를 '해외 이민'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'이민정책' 대신 '외국인정책'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
- 외국인정책은 외국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그 특성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'대상을 특화한 정책 명칭'인 외국인정책을 계속 사용하는 데 한계
- 이에 대상을 특화한 정책 명칭이 아닌 대상과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'이민정책'으로 정책 명칭을 전환
  - ⇒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, 인구구조 변화 등 대·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방향을 적극 제시 필요

#### < 이민정책 용어에 대한 범정부적 개념 변화 >



## 위상

- **【법정부 최상위 계획】** 외국인 및 이민 분야 법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에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



※ 위원 부처 이외 국세청, 해양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참여

## 성격과 기능

- **【종합적·체계적 추진】** 이민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 필요
- **【일관성·계속성 확보】**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장기적·종합적 전망에 입각한 5년간 장기계획으로 정책추진에 일관성·계속성 확보
- **【대국민 정책메시지】** 이민정책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, 국민이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참여

## 수립 근거 및 범위

- **【근거】**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따른 법정계획

### 제5조(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)

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,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4.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**【범위】**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, 기간 중 사업이 완료되거나 기간이 5년 이상인 과제를 포함

## 수립 절차

-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





###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정 (2007.7.18.)

-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규정, 외국인정책위원회 출범

###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(2008~2012)

- 제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 · 확정 (2008.12.17.)

###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(2013~2017)

-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 · 확정 (2012.11.28.)

###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(2018~2022)

- 제21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 · 확정 (2018.2.12.)

###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

| 일자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21. 6. |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한 포럼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 1. |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 5. |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워크숍 개최<br>※ 권역별 총 4회(경기·강원권, 경상권, 전라권, 충청권) |
| 2022. 6. | 이민정책 재설계 방안에 대한 전문가 포럼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 8. |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한 「국민참여단 온라인 토론회」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10. |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한 「국민참여단 대면 토론회」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11. | 기본계획 작성지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11. | 관계부처 참여 외국인정책실무분과위원회 개최(총 4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11. |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「이민정책위원회」(법무부장관 소속 자문위) 개최                      |
| 2022.12. | 국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기본계획(안) 공청회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3. 2. | 기본계획(안) 각 부처 의견 수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3.12. | 기본계획(안) 각 부처 2차 의견 수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23.12. | 외국인정책위원회(위원장:국무총리),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상정 및 심의 · 의결                   |

# II 기본계획 수립의 연혁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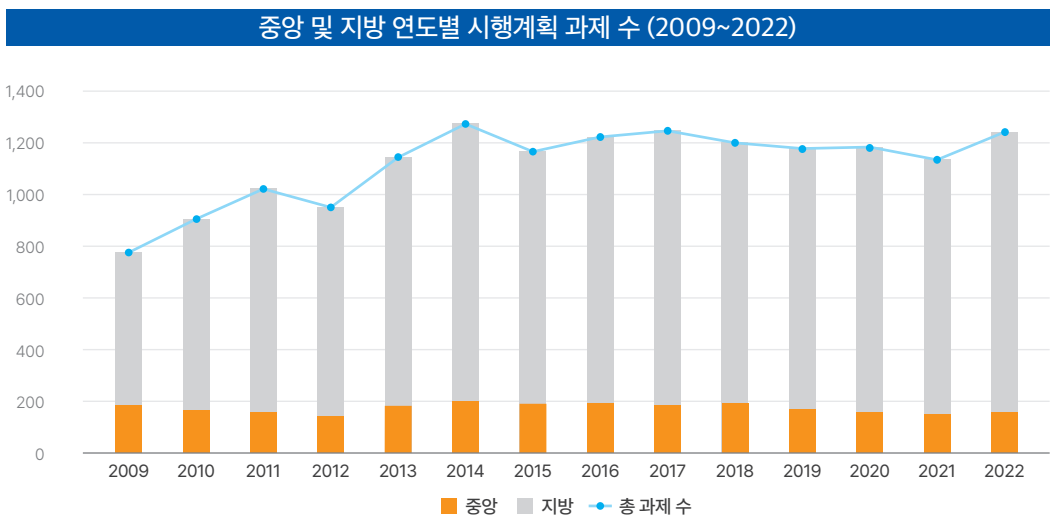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8~2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3~20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8~20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~20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비전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국인과 함께하는<br>세계 일류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<br>활기찬 대한민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공감! 인권과 다양성이<br>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<br>도약하는 미래지향적<br>글로벌 선도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책<br>목표                   | ①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<br>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[개방] 경제활성화<br>지원과 인재유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[개방] 국민이 공감하<br>는 질서있는 개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[경제] 이민을 활용한<br>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질 높은 사회통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[통합] 대한민국의<br>공동가치가 존중되는<br>사회통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[통합] 이민자의 자립과<br>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[안전] 안전하고<br>질서있는 이민사회<br>구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질서있는 이민행정<br>구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[인권] 차별방지와<br>문화다양성 존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[안전] 국민과 이민자<br>가 함께 만들어가는<br>안전한 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[통합] 국민과 이민자가<br>함께하는 사회통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외국인 인권 옹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[안전] 국민과 외국인이<br>안전한 사회구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[인권] 인권과<br>다양성이 존중되는<br>정의로운 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[인권] 이민자의 인권<br>가치를 존중하는<br>사회 실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[협력] 국제사회와의<br>공동발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[협력] 협력에 바탕한<br>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[협력/인프라] 글로벌<br>스탠다드에 부합하는<br>이민행정 기반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*정책목표 영역별 연도별 시행계획 과제 수 비율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차~제3차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목표별<br>분포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계획 과제: 169개<br>시행계획 달성률: 83.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계획 과제: 147개<br>시행계획 달성률: 80.2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본계획 과제: 166개<br>시행계획 달성률: 72.7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제: 통합 분야에 집중<br>시행계획 달성률: 78.6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2년 국내 체류외국인:<br>144만 5,103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7년 국내 체류외국인:<br>218만 49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2년 국내 체류외국인:<br>219만 9,46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통합] 과제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(72%)</li> <li>• 난민법 제정(2012.2., 2013.7.시행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차와 비교하여 시행 계획 과제 수가 (연간) 평균 306개 증가</li> <li>• 정책목표에 [협력] 추가 (1차 4개 영역 → 2차 5개 영역)</li> <li>• [인권] 영역 과제 비중이 크게 증가(1차 4.1% → 2차 28.0%)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개 정책목표 체계 유지</li> <li>• [안전]이 [인권] 영역 보다 우선순위를 차지</li> <li>• 2018년 예멘 난민 2021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입국</li> <li>• 코로나19로 기본계획 달성률 하락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심과제: [통합] 영역</li> <li>• 예산집중: [개방] 영역</li> <li>• 비집중: [안전] 영역에 과제/예산이 가장 적음</li> <li>• 환경에 따라 정책목표별 우선순위가 변화</li> <li>• 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 분과위원회 확대</li> </ul> |

## 0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(제1차~제3차)

| 목표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개방 | 해외 우수인재 확보 및 인력공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우수인재 제한적 이중국적 용인, 일반귀화요건 완화(1차-법무부)</li> <li>▲ 투자이민제도 적용지역 확대, 투자 유형의 다변화(2차-법무부, 지경부)</li> <li>▲ 국제장학프로그램 추진, 우수유학생 유치 전담기관 지정·육성(2차-교과부)</li> <li>▲ MICE 연계관광 활성화,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(3차-문체부)</li> <li>▲ 창업이민 활성화, 고용창출형 투자자 혜택 확대(3차-법무부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합 | 이민자가 적응·자립하는 사회통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결혼이민자의 자립모델 개발·보급,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(1차-노동부, 복지부 등)</li> <li>▲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기능 강화(2차-법무부)</li> <li>▲ 이민배경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 적응 지원(2차-문화부 등)</li> <li>▲ 고품질 체류관리 인프라 구축, 하이코리아 고도화 추진(3차-법무부)</li> <li>▲ 외국인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시행,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(3차-복지부, 고용부 등)</li> </ul>            |
| 안전 |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체계 선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자동출입국심사제도 도입, 외국인 지문정보 등 수집 및 활용(1차-법무부)</li> <li>▲ 관계기관 간 기초질서 위반 정보 공유, 체납자 체류관리 강화(2차-행안부 등)</li> <li>▲ 외국인 불법고용주 제재 강화, 불법 직업소개 근절(2차-고용부, 행안부 등)</li> <li>▲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,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운영(3차-법무부)</li> <li>▲ 선박업무 정보 시스템 고도화,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(3차-해수부, 해경청 등)</li> </ul>         |
| 인권 |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가정폭력 피해 외국여성 보호·지원, 인권침해 외국인 체류지원(1차-여성부 등)</li> <li>▲ 인도적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, 행려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(2차-복지부 등)</li> <li>▲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,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(2차-문화부 등)</li> <li>▲ 국제 인권규범 이행 강화,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강화(3차-외교부 등)</li> <li>▲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및 교육,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(3차-법무부)</li> </ul> |
| 협력 | 국제협력, 중앙-지자체-시민사회 협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이민연락관 파견 확대 검토, 개도국 이민당국자 교육프로그램 운영(1차-법무부)</li> <li>▲ 고용허가제 만기도래자 귀국에 대한 송출국 책임 강화(2차-고용부, 법무부)</li> <li>▲ 개발도상국 우수인재 초청연수·교육지원(2차-외교부, 교육부)</li> <li>▲ 국제기구 협력 증진,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참여(3차-법무부)</li> <li>▲ 중앙·지자체 협의회 구성, 지자체 역할 및 인프라 확대 추진(3차-법무부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

## 02 평가 개요

-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[개방], [통합], [안전], [인권], [협력]으로 구조화하여 균형있는 이민정책 발굴을 시도
  - 제1차 기본계획에 없었던 [협력] 영역이 제2차 기본계획에 추가되어 제2차 및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5개 영역으로 분류
- (중심영역) [통합]과 [개방] 영역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경제발전을 지향
- (성장영역) [인권] 영역은 제1차 기본계획에서 과제 수와 예산이 가장 적었으나, 2013년 「난민법」이 시행되며 제2차 기본계획에서 눈에 띄게 증가
- (미흡영역) [안전] 영역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1차~제3차 기본계획에서 모두 가장 적은 과제 수와 예산이 할당
  - ⇒ [안전]과 [협력] 영역 강화를 위한 이민정책 과제 발굴 필요
- (과제 수) 제1차 → 제2차 → 제3차 기본계획으로 갈수록 연도별 시행계획 과제 수 증가는 이민정책의 확대를 보여줌



- (과제 달성률)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종합한 과제 달성률은 제1차 83.0% → 제2차 80.2% → 제3차 72.7%(코로나19)로 점차 하락
  - ⇒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과제 달성률 제고를 위해 체계화된 성과관리시스템 등으로 평가 내실화 노력 필요

정책목표별 연도별 시행계획 과제 수 및 예산 비율

(단위: %)

| 제1차~제3차 평균 | 개방   | 통합   | 안전   | 인권   | 협력  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과제 수       | 13.8 | 60.5 | 4.0  | 18.5 | 3.2  |
| 예산         | 44.8 | 32.7 | 3.0  | 7.0  | 12.6 |
| 과제 달성률     | 75.7 | 75.6 | 83.2 | 76.9 | 81.3 |

- (효율성) 정책 과제와 예산이 [통합] 영역 및 우수 외국인재 확보, 투자유치 등 [개방] 영역에 집중됨에도 타 영역에 비해 낮은 과제 달성률을 보임  
 ⇒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과제설정과 효율적 예산운영이 필요  
 ⇒ 우수 외국인재 확보, 투자자 유치 등은 범정부적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하여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요청됨

## 03 지난 15년간(1~3차) 주요 성과와 한계

### 주요 성과

#### ①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인력부족 대응

- 생산가능인구 감소,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로 심화된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및 확대
- (고용허가제)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  - 2004년 도입 후 꾸준히 도입규모 및 결정방식 등 제도를 개선
  - 국민일자리 잠식 검증, 장기체류 억제 등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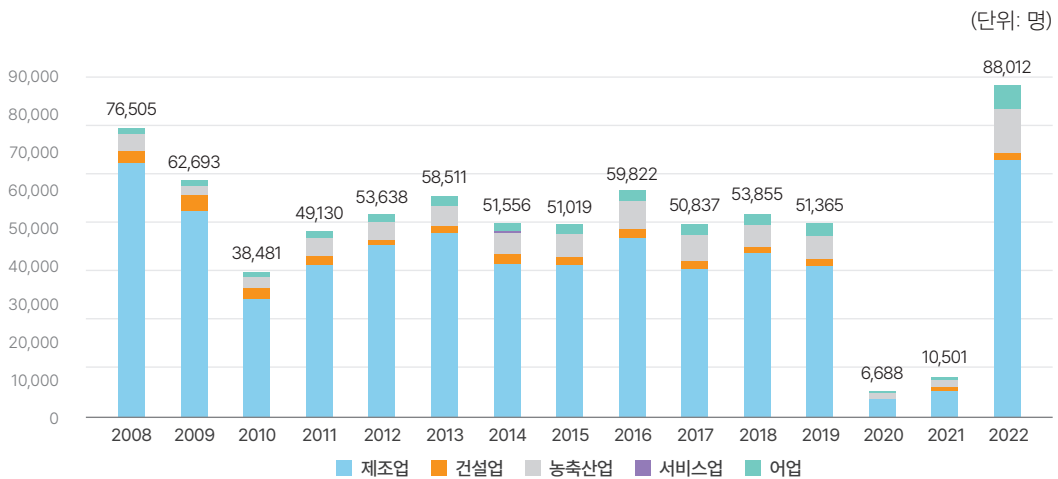
업종별 외국인고용 사업장 수 (2022)

(단위: 개소)

| 구분       | 제조업    | 건설업 | 농축산업  | 서비스업  | 어업    | 광업 | 합계  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---|
| 일반(E-9)  | 34,493 | 450 | 8,297 | 108   | 5,193 | 0  | 48,541 |
| 특례(H-2)  | 2,440  | 141 | 27    | 7,114 | 10    | 2  | 9,734  |
| 일반+특례 병행 | 2,452  | 22  | 28    | 3     | 5     | 0  | 2,510  |
| 합계       | 39,385 | 613 | 8,352 | 7,225 | 5,208 | 2  | 60,785 |

\*출처: KOSIS, 고용노동부, 고용허가제고용동향, 2022년 4분기

## 고용허가제(E-9)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도입 현황 (2008~20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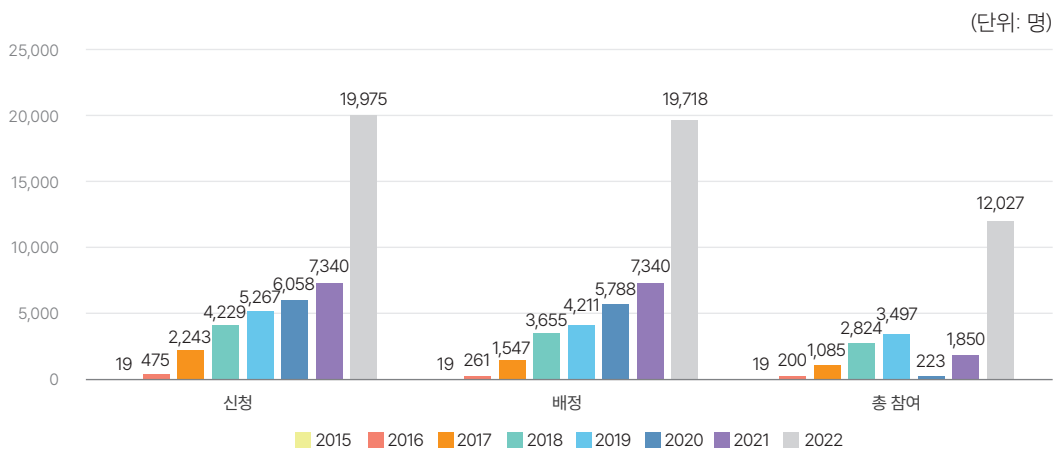


\*출처: KOSIS, 고용노동부, 고용허가제고용동향

- (계절근로자)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어가에 필요한 외국인력 수요를 직접 신청하고 배정받아 농어촌 구인난 해소에 기여('17년 정식 도입)
  - 파종·수확기 등 계절성 있는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까지 단기·집중적으로 외국인을 고용('17년 21개 → '22년 104개 지자체 참여)

※ 1개월 미만 초단기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(시범)사업 실시(농림축산식품부, 2022)

## 연도별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 (2015~2022)



\*출처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## ② 국경관리 강화 및 출입국심사 편의 증진

- (자동출입국심사) 자동출입국심사제도 도입(2008년 시행)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승객의 출입국 편의 제공

- 우리나라 국민이 타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정 체결(2012년 시행)

※ 협정 체결: 미국, 홍콩, 마카오, 대만, 독일

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현황

(단위: 천명)

| 구분          | 2012   | 2014   | 2016   | 2018   | 2020   | 2022  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자동심사대 이용 비율 | 11.4%  | 14.4%  | 21.6%  | 34.3%  | 37.1%  | 51.5%  |
| 자동심사대 이용자 수 | 5,735  | 8,848  | 17,269 | 30,467 | 5,460  | 9,992  |
| 전체 출입국자 수   | 50,322 | 61,652 | 79,988 | 88,908 | 14,702 | 19,414 |

\*출처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- (탑승자 사전확인) 항공기 탑승권 발권단계에서 탑승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자의 탑승을 원천 차단하여 국가안보에 기여(2017년 시행)

입국 부적격 승객 탑승 차단 현황

| 연도 | 2017   | 2018   | 2019   | 2020   | 2021   | 2022    |
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건수 | 13,226 | 19,055 | 21,554 | 46,256 | 32,335 | 116,443 |

\*출처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- (전자여행허가) 무사증입국 대상국 국민이 우리나라 입국 전 여행정보를 입력하여 사전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, 입국절차의 편리성과 국경안전 확보(2021년 시행)

-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입국 시 '입국신고서' 제출을 생략하여 신속한 출입국 심사 서비스 혜택을 제공

-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에서 정밀 분석·심사하여 국익 위해(危害) 우려자(입국 규제자, 불법체류 고위험자)의 입국을 차단

2022년 K-ETA 신청 현황

| 구분 | 2월    | 4월      | 6월      | 8월      | 10월     | 12월    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건수 | 8,961 | 110,948 | 173,904 | 190,710 | 329,356 | 310,864 |

\*출처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- (출입국우대카드)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, 교통약자 등 출입국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서비스(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) 제공
  - 고용노동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선정기관에서 추천하면 법무부 적격심사를 거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

※ 발급 현황: '22.12월 기준 총 43,918명에게 발급

### 3 이민자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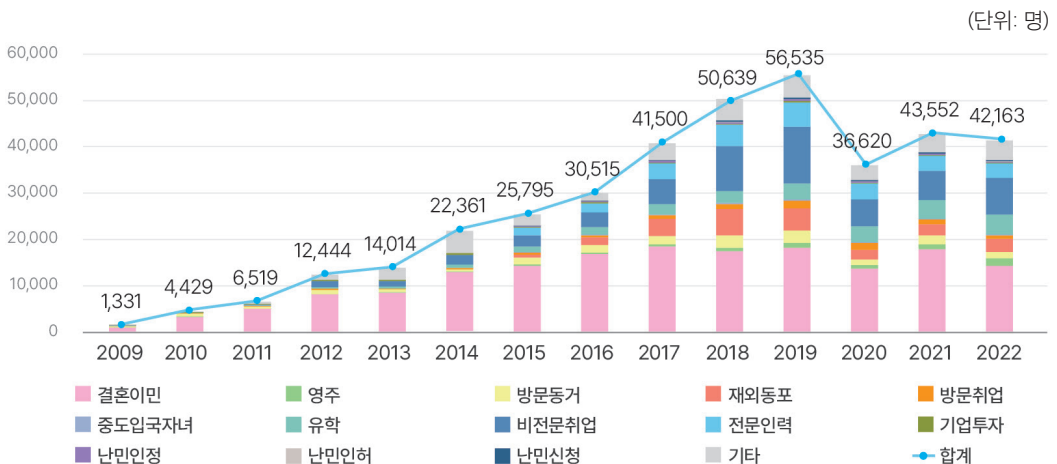
- (사회통합 프로그램) 한국어와 한국 문화·사회 이해 교육을 통해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·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 기회 제공(2009년 도입)

※ (참여혜택) 이수자는 체류허가 및 영주·국적 신청 시 가점이나 귀화시험 면제

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요

| 구분 \ 교육명 | 한국어와 한국문화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한국사회이해 |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|
| 단계       | 0단계       | 1단계   | 2단계   | 3단계   | 4단계   | 5단계    |      |
| 과정       | 기초        | 초급1   | 초급2   | 중급1   | 중급2   | 기본     | 심화   |
| 총 교육시간   | 15시간      | 100시간 | 100시간 | 100시간 | 100시간 | 70시간   | 30시간 |

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수 (2009~2022)



\*출처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

- (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) 대한민국의 기초 법·제도, 사회적응 정보 제공(18개국 언어)을 통해 장기체류하려는 이민자의 조기 적응을 지원(2015년 본격 시행)

조기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수

(단위: 명, 회)

| 연도    | 2015   | 2016   | 2017   | 2018   | 2019   | 2020  | 2021  | 2022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참여자   | 47,845 | 60,358 | 91,938 | 79,656 | 51,354 | 6,620 | 7,241 | 29,521 |
| 운영 횟수 | 1,840  | 2,245  | 2,735  | 2,736  | 2,116  | 638   | 802   | 1,745  |

\*출처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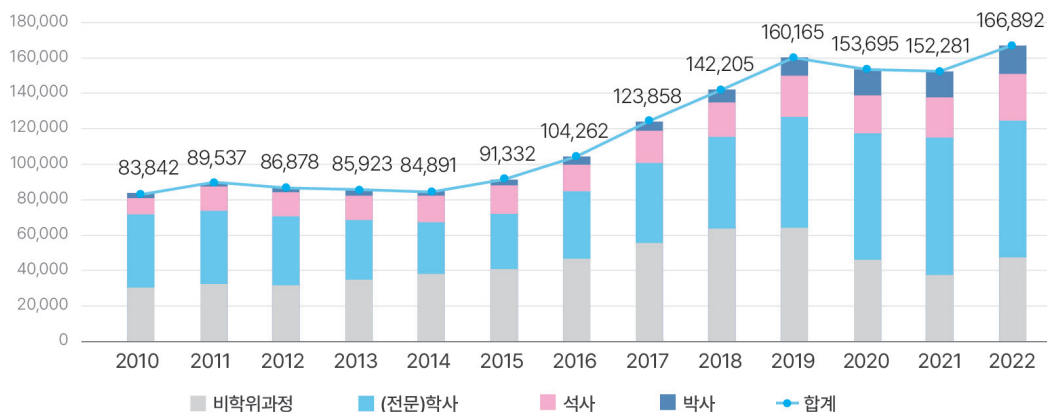
#### 4 유학생 양적 확대

- 전문·학사학위과정(비학위 제외) 유학생은 2010년 6만 명에서 2022년 12만 4천 명으로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고, 코로나19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,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

※ 2022년 유학생의 국적은 중국 40.4%(67,439명) > 베트남 22.7%(37,940명) > 우즈베키스탄 5.2%(8,608명) > 몽골 4.4%(7,348명) > 일본 3.4%(5,733명) 순

유학생 수 증감 (2010~20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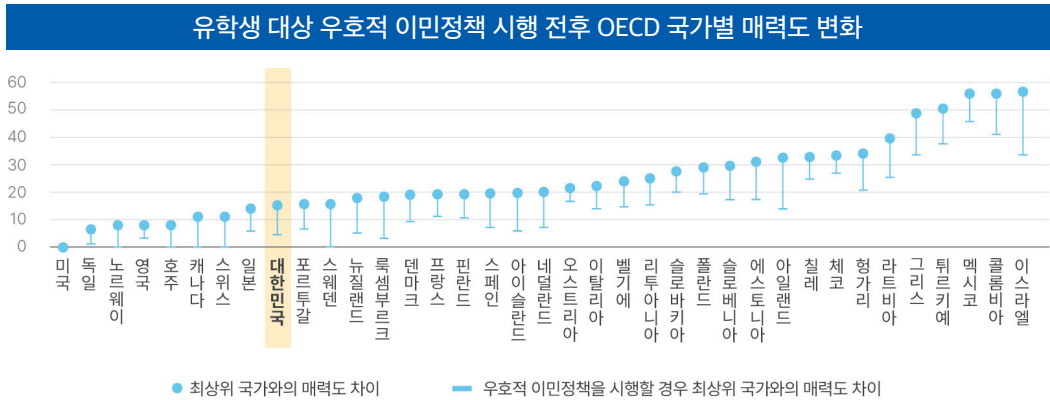
(단위: 명)



\*출처: 교육부, 교육기본통계

- (취업 연계) 일정 자격을 갖춘 유학생에게 구직기간(학사 1년/석박사 2년)을 부여하여 국내 취업 장려
  - 뿌리산업 기술과 기량이 검증된 졸업생이 기업에 취업하여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

- **(유학생 매력도)** 2023년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유학생에 대한 매력도는 37개국 중 9위
  - 등록금, 아르바이트 및 졸업 후 구직 요건, 배우자 동반 등 유학생에게 우호적 이민정책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매력도는 최상위권으로 상승



\*출처: OECD, Indicators of Talent Attractiveness, 2023

## 5 난민위기 등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

- **(난민법 제정)** 2013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단일법으로 「난민법」을 시행하였고, 이후 난민정책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로 자리잡음
- **(심사 인프라 확충)** 2016년 제2차 기본계획 기간에 난민심사만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인력을 확충
  - 2018년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정황 조사·연구,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
- **(국제사회 의무 이행)** 2019년 제1회 글로벌난민포럼에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공약하고 성실히 이행
- **(재정착 난민)** 해외 난민캠프에 임시로 정착한 난민 중 우리나라로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심사 절차를 거쳐 수용하는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(2015년부터 시범실시)
  -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난민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난민수용 방식을 다각화

※ 재정착 난민제도는 정부가 수용의 규모와 대상을 미리 결정한다는 점에서 절차 수월성과 사회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
- **(인도주의적 지원 확대)** 2021~2022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,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특별체류조치 시행

## ⑥ 한국 계속체류 희망자 비율 증가

- (계속 체류 희망)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이후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(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, 2022)

※ 계속체류 희망: (2012년) 84.3% → (2017년) 86.1% → (2022년) 88.6%

- 2022년 기준 희망하는 체류 방법은 ①체류기간 연장(52.3%), ②영주자격 취득(17.3%), ③한국 국적 취득(10.6%) 순으로 높음
- (전문인력 및 유학생) 2012년에는 계속 체류를 원하는 전문인력, 유학생 비율이 타 체류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, 점차 영주자격 취득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계속체류를 희망하는 비율 증가

체류자격별 계속체류 희망 구성비

(단위: %)

|       | 결혼이민 | 재외동포 | 방문취업 | 비전문취업 | 전문인력 | 유학생  | 기타 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2012년 | 97.6 | 88.0 | 92.3 | 79.2  | 68.3 | 63.7 | 76.1 |
| 2017년 | 98.1 | 94.5 | 95.1 | 76.7  | 79.0 | 61.2 | 84.0 |
| 2022년 | 97.1 | 93.9 | 93.4 | 80.8  | 85.9 | 77.7 | 88.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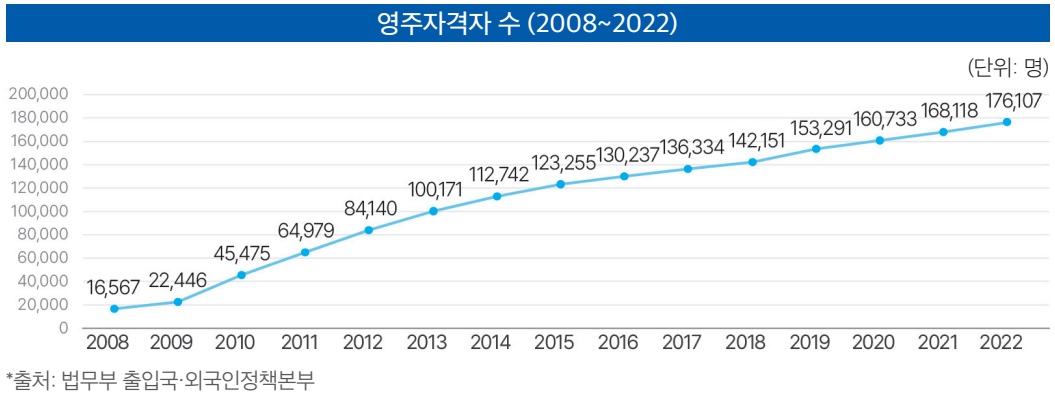
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계속체류 희망 구성비

(단위: %)

|      | 연도   | 계속 체류 희망 | 체류 연장 방법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| 계속 체류 희망하지 않음 |
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|      |          | 체류기간 연장  | 체류자격 변경 | 영주자격 취득 | 한국국적 취득 | 기타  |               |
| 전문인력 | 2012 | 68.3     | 59.0     | 2.1     | 5.9     | 1.1     | 0.2 | 31.7          |
|      | 2017 | 79.0     | 57.9     | 7.0     | 11.7    | 2.1     | 0.3 | 21.3          |
|      | 2022 | 85.9     | 63.5     | 7.4     | 13.7    | 1.0     | -   | 14.1          |
| 유학생  | 2012 | 63.7     | 48.0     | 10.7    | 3.9     | 0.8     | 0.3 | 36.3          |
|      | 2017 | 61.2     | 40.2     | 13.5    | 5.0     | 1.6     | 0.8 | 38.8          |
|      | 2022 | 77.7     | 53.0     | 15.4    | 7.1     | 2.3     | 0.0 | 22.3          |

\*출처: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(2022)(통계청·법무부)

- (영주자격자 수 급증) 영주자격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,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인 2008년 16,567명에 불과하던 영주자격 소지자는 2022년 176,107명으로 15년 간 10배이상 증가



## 한계 및 개선필요 사항

### ① 숙련·전문 이민자 정주 유도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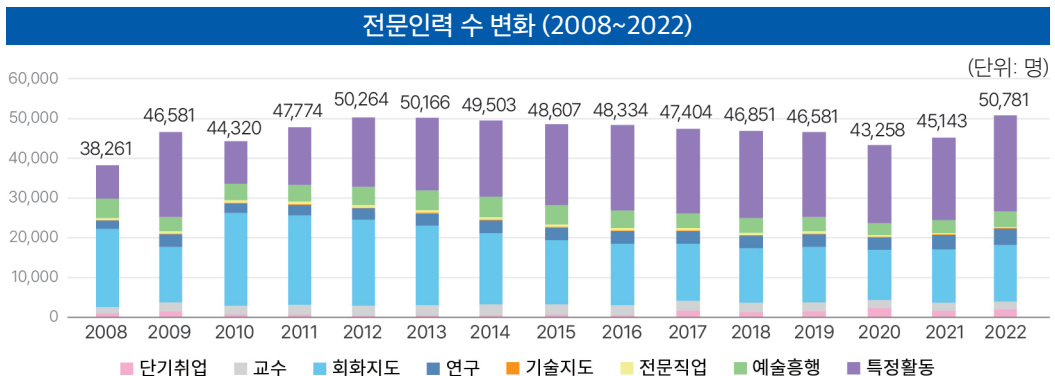
- **한계** (단기·비숙련 중심) 취업 이민은 단기·비숙련 인력 도입을 중심으로 정책이 운용되고 있으며, 전문인력 수 증가 정체

※ 2022년 취업자격 이민자 중 비숙련 398,621명(88.7%), 전문인력 50,781명(11.3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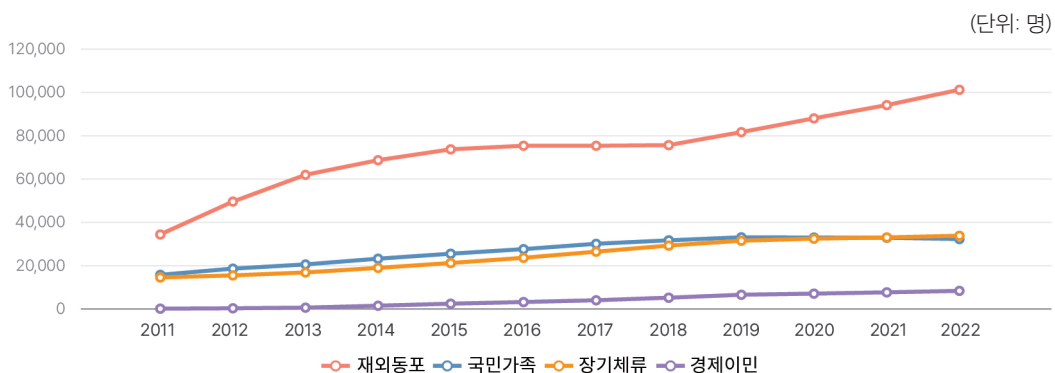
➡ **개선필요** 현재 계속체류 희망 비율이 가장 낮은 외국인 유학생의 본국 귀국 비율을 낮추고 전문인력으로 편입을 유도

➡ **개선필요** 비숙련인력에서 숙련인력으로 성장한 사람이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

※ 단기취업 외국인력은 국내에서 최소한으로 소비하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비율이 높으나, 숙련인력 이민자는 국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족동반이 가능하여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어 긍정적임



영주자격자 유형별 추이 (2011~2022)



\*출처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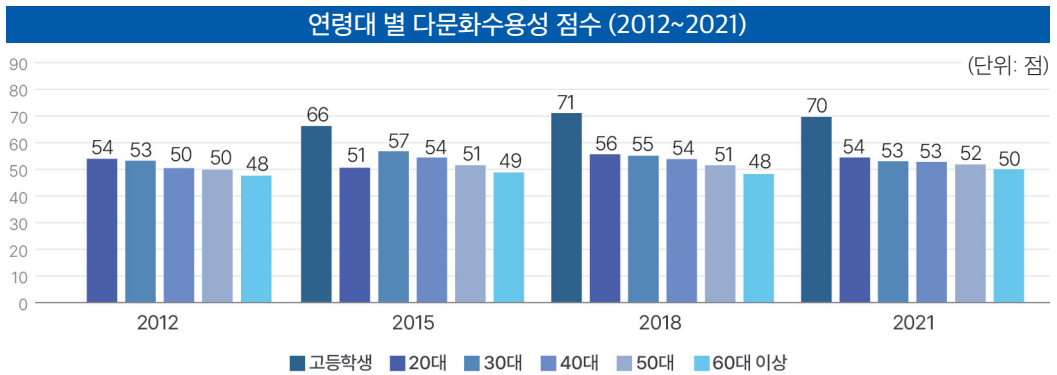
- **한계 (영주경로)** 경제이민 경로를 통한 영주 이민자 수가 매우 적음

※ 2021년 전체 영주자격자 중 56%가 동포 경로로 영주자격을 취득하였고, 경제이민 유형인 투자, 우수인재, 취업 등 경로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이민자는 4%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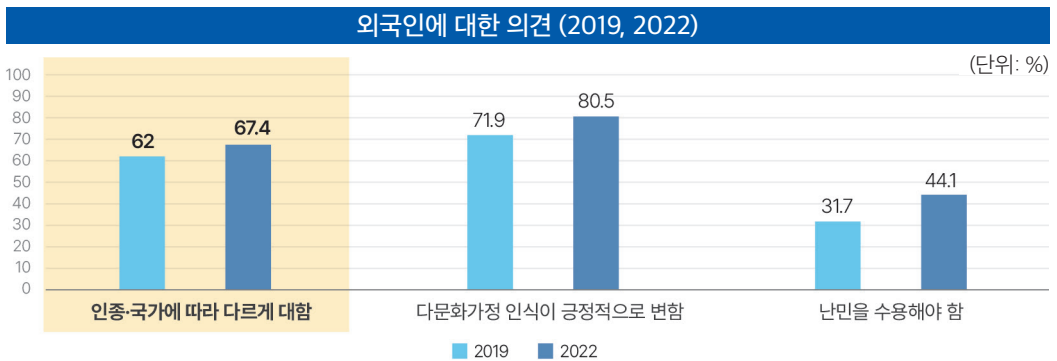
➡ **개선필요** 유학생 및 전문인력이 영주자격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 및 영주자격 경로를 개편

## ② 상호문화 이해도 향상 필요

- **한계 (교육에 집중된 통합 정책)**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을 강조하는 통합과제가 주를 이루고 국민과 이민자 간 상호 소통과제는 소수에 불과
- **한계 (다문화 수용성)**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[통합]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나 다문화 수용성은 미진
  -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, 성인의 경우 2015년 상승 이후 미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
- **한계 (인종·국적 편견)** 우리 사회는 외국인의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는 의견이 67.4%로, 이러한 편견이 동포, 외국인근로자, 난민 등 체류자격에 따른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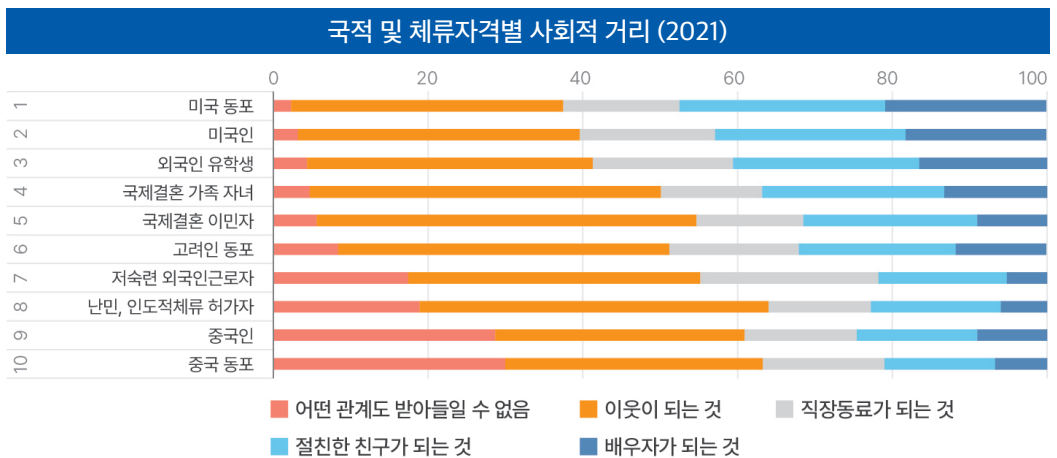


\*출처: 여성가족부,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, 2021



\*출처: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인의 의식·가치관 조사, 2022

- ➡ **개선필요**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거나 통합하는 일방향적 정책보다는 국민과 이민자가 상호 교류하고 접촉면을 넓히는 정책 도입
- ➡ **개선필요**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민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



\*출처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, 외국인·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, 2021

### 3 중앙 및 지자체 간 협력 강화 필요

- **한계 (중앙 중심)** 중앙부처 주도의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차별화된 이민수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며, 지자체 역시 지역 단위의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, 관련 연구 등 인프라가 미흡

➡ **개선필요** 지역의 이민수요를 적시에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-지방 간 협력 채널 마련 및 지자체 단위의 이민정책 전담기구 설치 필요

- **한계 (추진체계)** 범정부 이민정책을 조정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다수 부처 정책 조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

- 외국인·출입국정책, 다문화가족지원정책, 외국인력정책 등 부처별 단편적, 분절적 정책 시행이 중복·비효율, 예산 낭비를 야기한다는 지적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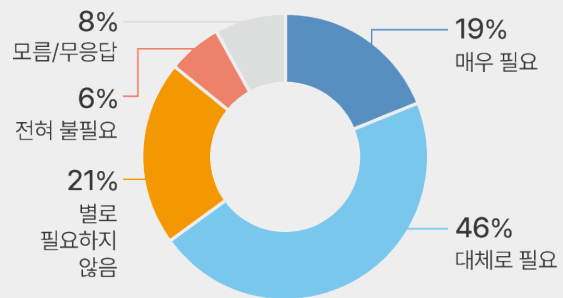
\* △‘외국인 관련 부처 중구난방...이민행정 중복·사각 심각’ (22.5., 세계일보)

△이민정책의 파편화와 선별적 사회통합 :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중심으로, (석하림·고민희, 2022)

➡ **개선필요**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, 책임있게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한 요구 증대

이민청 설립 필요도

-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
  - “필요하다” 65%
  - “필요하지 않다” 27%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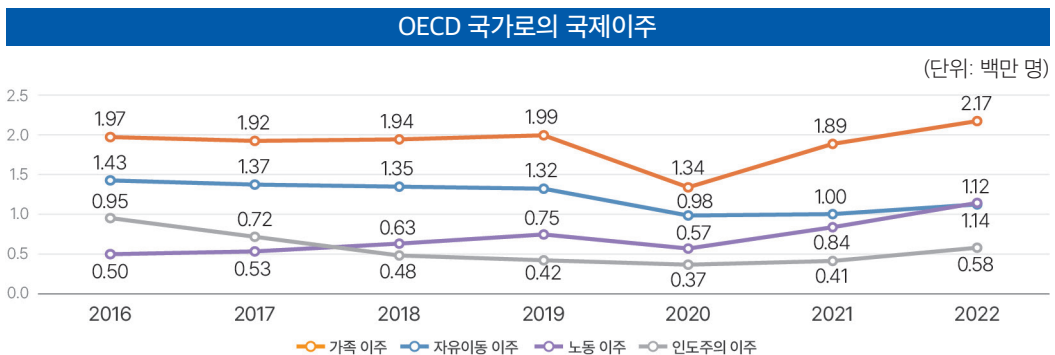
\*출처: 전국지표조사(NBS), 2022.12.

# III 정책 환경 분석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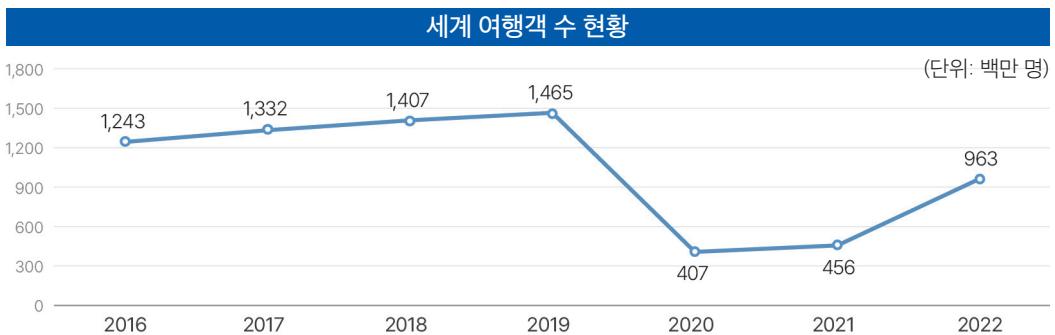
## 01 국제 이민 환경

### ①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

- (국제이동의 반등) 최근 인적·물적 교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, 여행객 증가와 이민자 유입으로 국제이동 활성화 추세
- 세계 각국은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어 관광객과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취업이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 전환 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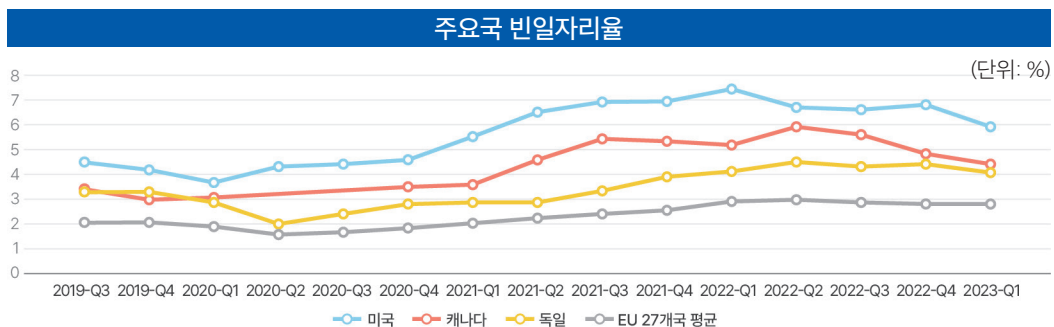
\*출처: OECD 국제이주전망보고서, 202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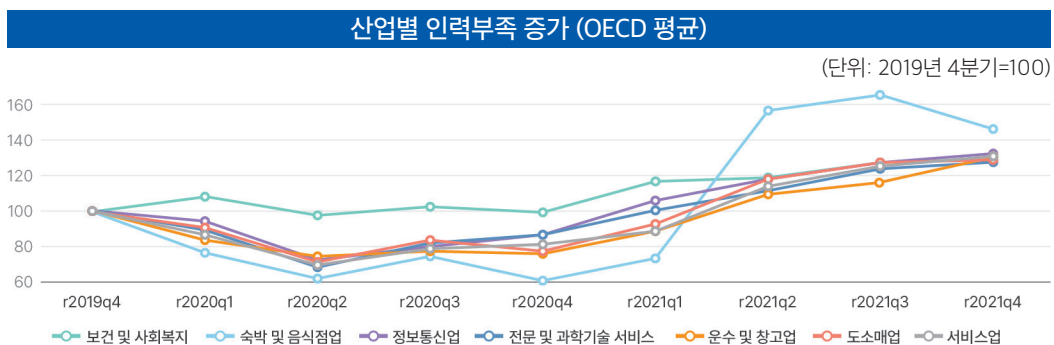
\*출처: 한국문화관광연구원(관광지식정보시스템). 2023



- (필수인력 확보 노력)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인력부족 현상 심화,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는 지속
  - 제조, 농업, 보건 등 인력난이 심한 분야의 취업비자 제도 개선, 영주권 접근성 강화 등 이민자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



\*출처: Eurostat, 각국 통계청 빈일자리율 통계, 2023



\*출처: OECD, 코로나19 이후 노동력부족, 2022

## ② 그린·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경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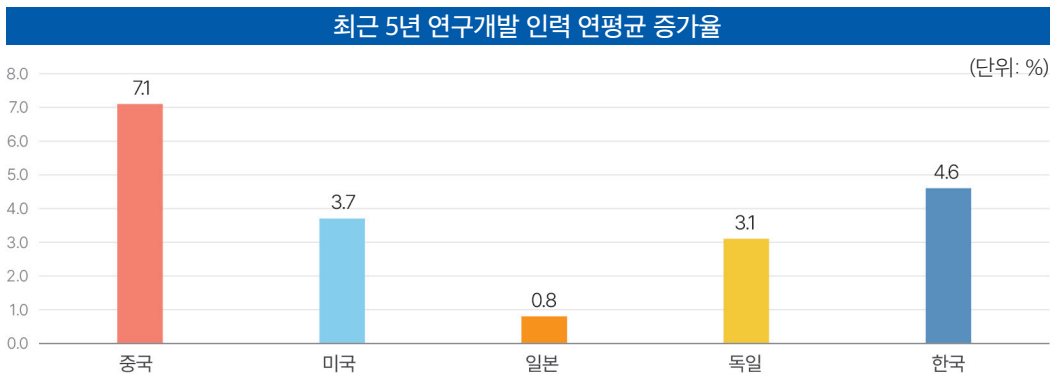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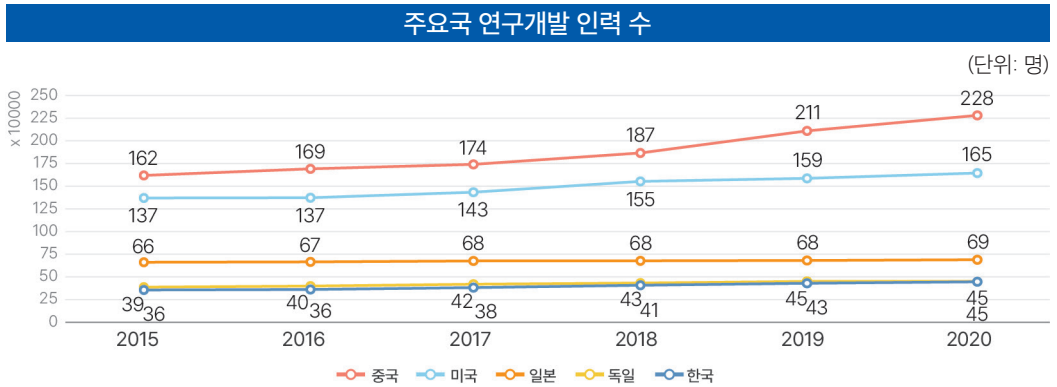
- (디지털 이민행정) EU는 2025년까지 비자절차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목표, 캐나다는 영주권 신청절차의 100% 온라인화 선언 등 이민행정 영역에 디지털 시스템 활용 확대 추세

디지털 및 AI 시스템 활용 예시

| 입국 전 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입국 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체류 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e-비자신청 플랫폼</li> <li>• 신청서 초기 검토 및 자동 분류</li> <li>• 기준에 따른 비자 자동 승인 및 발급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드론을 활용한 국경 지역 순찰</li> <li>• 키오스크에서 신원확인</li> <li>• 보안 검사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민자 법률자문 챗봇</li> <li>• 난민 정착 거주지 배치</li> <li>• 직업 알선</li> <li>•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신원정보 시스템 활용</li> </ul> |

\*출처: EMN(유럽이민네트워크)·OECD, 이민관리를 위한 디지털과 인공지능 활용, 2022

- (산업·고용 구조 개편) 신기술 분야 확대, 고기술 제조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, 프리랜서 및 원격근무 증가로 디지털 인재유치를 위해 25개국에서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중
-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, 친환경·신재생에너지, 우주항공 등 첨단·신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인재 보호 및 영입에 경쟁



\*출처: 한국경제연구원,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, OECD, 20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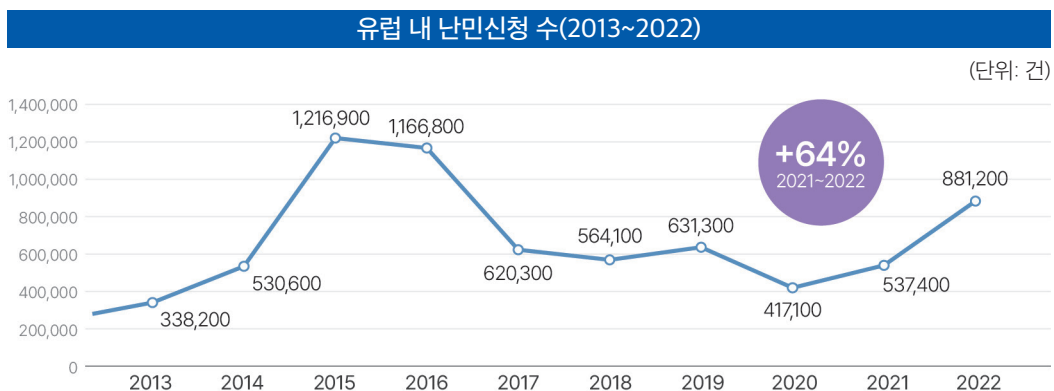
### ③ 이민에 대한 사회적 갈등 반복과 정치 쟁점화

- (사회적 갈등 반복) 이민자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, 문화적 충돌로 인한 차별문제가 자국민과 이민자 간의 갈등을 유발
    -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과 관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어 나타남
- ※ 프랑스 방리유에서 발생한 이민자 소요사태(2005년), 경찰의 총격에 의한 이민자 2세 청소년(나엘) 사망 사건으로 인한 소요사태(2023년)

- (정치 쟁점화) 난민과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인 유럽에서 이민정책은 정치 쟁점화되어 '반(反)이민'을 표방하는 극우 성향의 정당이 득세

- 최근 기후변화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시리아 내전,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재집권 등에 따른 난민 및 이민자의 급격한 유입과 이에 대한 반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

※ 강제 이주자 수가 2022년 1억8백만 명으로 2013년(5천1백만 명) 대비 2배 증가(유엔난민기구, 2021 글로벌동향보고서, 2022)



\*2015~2016: 시리아, 2022: 우크라이나-아프가니스탄 난민

\*출처: 유럽연합 통계국(eurostat)

| 유럽 반이민성향 정당 총선 득표율 |      |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---|
| 핀란드                | 2023 | F당 | 20.1%(2위) |
| 이탈리아               | 2022 | F당 | 26.0%(1위) |
| 스웨덴                | 2022 | S당 | 20.5%(2위) |
| 프랑스                | 2022 | N당 | 17.3%(3위) |
| 독일                 | 2021 | A당 | 10.3%(5위) |
| 스위스                | 2019 | S당 | 25.6%(1위) |
| 스페인                | 2019 | V당 | 15.1%(3위) |

- (이민·난민 대응) EU는 「신(新)이민·난민 협약\*」에 대해 잠정 합의('23.12.)하고, 프랑스는 이민자에 대한 복지를 축소하고, 이민 쿼터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을 개정('23.12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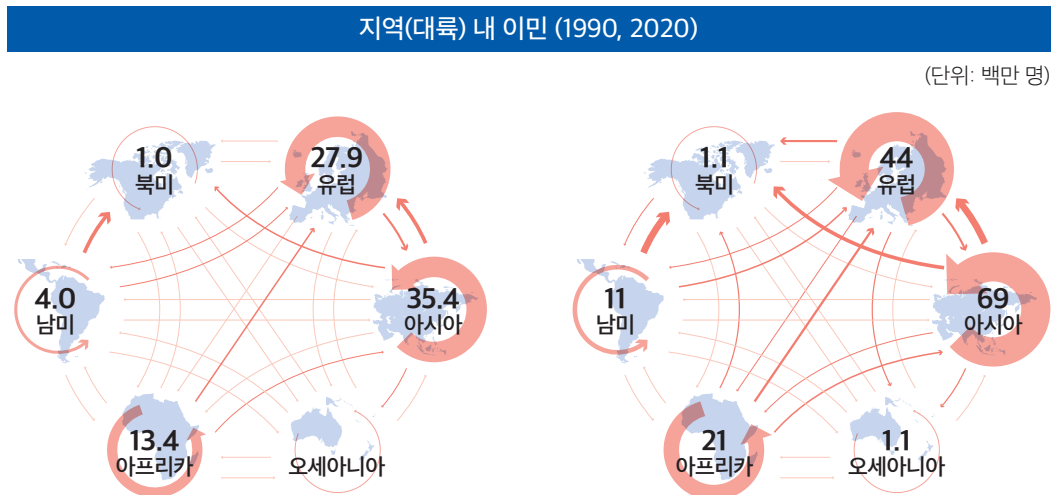
\* 협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EU 차원에서 이주를 관리하고, 연대, 책임 등을 기반으로 이주 및 비호에 대한 공통된 접근 방식을 확립하기 위한 5개 규정(△비호 및 이주 관리, △비호절차, △심사, △생체인증 데이터베이스, △긴급상태 및 불가항력)으로 구성

#### 4 아시아 역내 이민 활성화

- (역내교류 증대) 2020년 세계 이민자(2억8,100만 명)의 41%가 아시아지역 출신으로 이 중 60%가 아시아 내 다른 국가로 이출

※ 아시아지역 이민자 송출: (1990년) 5,696만 명 → (2020년) 1억1,491만 명

-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 25%, 동아시아 21%, 태평양 21%, 남아시아 18%, (중동)서아시아 15% 순(IOM, 2022)



\*출처: IOM, 세계 이민 보고서, 2022; 뉴욕타임즈, 전 세계적 이민자가 증가, 2018.6.20.

- (한·중·일 이민정책 경쟁) 아시아 경제부국인 한·중·일에서의 빠른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이민자를 흡입하는 요인으로 작용
- 일본·중국·대만은 인구감소 및 인력부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정책 총괄 기관을 신설·정비함

|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<br>(2019 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안부 국가이민관리국<br>(2018 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정부 이민서<br>(2007 신설, 2015 개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‘특정기능’ 비자 신설(2019):<br>단순노무 취업제한 폐지<br>단순노무 → 중숙련 경로 신설<br>(가족동반, 영주 가능) | 외국인주중업무허가제도 실시<br>(2017): 인재우선발전전략으로<br>고급인재는 장려하고,<br>일반 소양의 인구는 통제하며,<br>낮은 소질의 인구는 제한 | 신경제이민법 제정(2018):<br>외국인 중급 기술인재 및<br>전문인재, 투자이민 장려<br>단순노무 → 중숙련 경로 신설로<br>영주신청 가능(2022) |

## 5 대한민국의 부상

- (경제적 지위) 2021.7월 우리나라는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(UNCTAD) 설립 이후 개도국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'선진국'으로 지위 변경
  - 2022년 수출·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인 세계 6위, 임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향후 경제이민자 유입 증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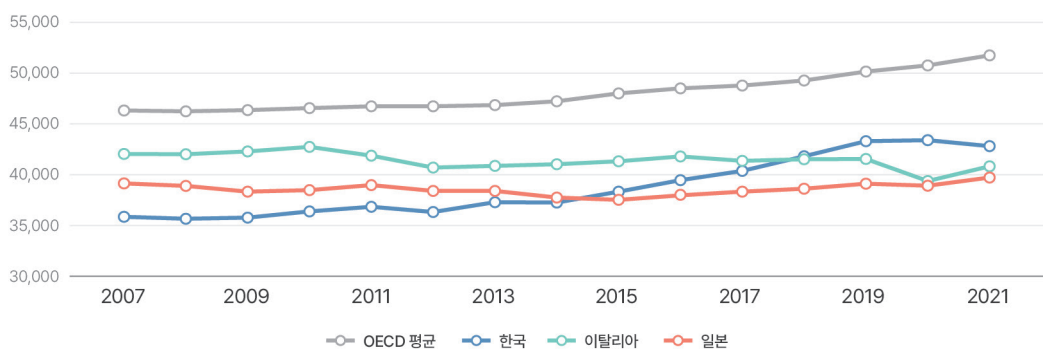
국가별 GDP 및 수출액 순위

| 순위 | GDP       |           | 수출액       |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| 2020      | 2021      | 2021      | 2022      |
| 1  | 미국        | 미국        | 중국        | 중국        |
| 2  | 중국        | 중국        | 미국        | 미국        |
| 3  | 일본        | 일본        | 독일        | 독일        |
| 4  | 독일        | 독일        | 네덜란드      | 네덜란드      |
| 5  | 영국        | 인도        | 일본        | 일본        |
| 6  | 인도        | 영국        | 홍콩        | <b>한국</b> |
| 7  | 프랑스       | 프랑스       | <b>한국</b> | 이탈리아      |
| 8  | 이탈리아      | 이탈리아      | 이탈리아      | 벨기에       |
| 9  | 캐나다       | 캐나다       | 프랑스       | 프랑스       |
| 10 | <b>한국</b> | 러시아       | 벨기에       | 홍콩        |
| 11 | 러시아       | <b>한국</b> | 캐나다       | 캐나다       |

\*출처: World Bank, IMF, 2022년 한국 GDP는 13위

OECD 국가 연 평균임금 추이

(단위: 달러)



\*출처: OECD, 각국 물가수준 반영 달러화·구매력평가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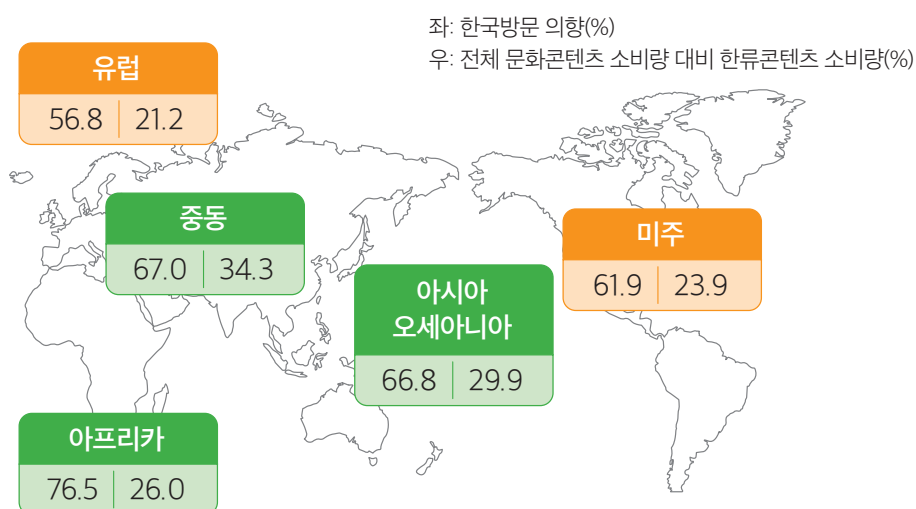
- (문화 영향력) 한류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글로벌 매력도 8위, 국가 브랜드 10위, 소프트 파워 12위를 차지하며 문화매력 국가로 도약
- 2022년 K-콘텐츠 수출액은 가전, 배터리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액을 크게 상회하였고, 15년간 5.5배 이상 증가('08년 3.1조 원 → '22년 17.2조 원)

국가별 글로벌 매력도 및 브랜드 순위

| 순위 | 글로벌 매력도   |             | 국가 브랜드    |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| 2022      | 점수          | 2022      | 가치<br>(10억 달러) |
| 1  | 독일        | 100         | 미국        | 26,472         |
| 2  | 미국        | 99.9        | 중국        | 21,528         |
| 3  | 홍콩        | 87.6        | 독일        | 4,504          |
| 4  | 영국        | 85.2        | 일본        | 4,284          |
| 5  | 일본        | 85.1        | 영국        | 4,115          |
| 6  | 싱가포르      | 85.0        | 프랑스       | 3,152          |
| 7  | 중국        | 83.1        | 인도        | 2,595          |
| 8  | <b>한국</b> | <b>79.2</b> | 캐나다       | 2,238          |
| 9  | 호주        | 75.2        | 이탈리아      | 2,155          |
| 10 | 캐나다       | 73.8        | <b>한국</b> | <b>1,911</b>   |

\*출처: The European House-Ambrosetti, GAI ranking

글로벌 한류 트렌드 (20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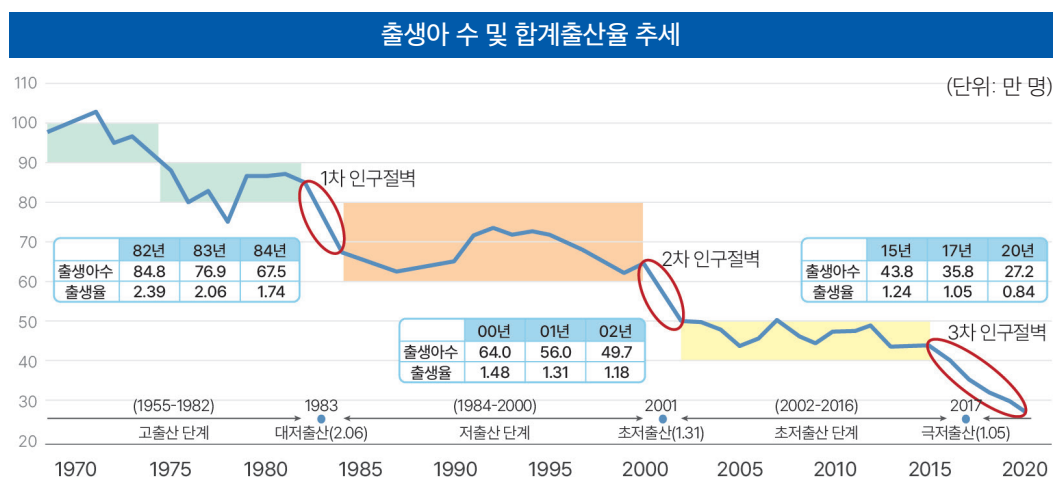


\*출처: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, 글로벌 한류트렌드, 2022

### 1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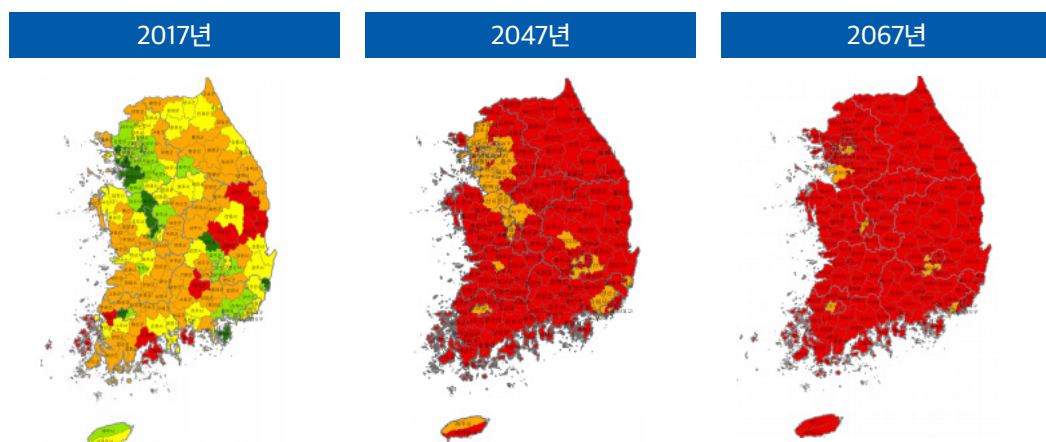
- (인구위기)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감소에 직면하여 2020년 사상 첫 데드크로스(사망자 수 30.5만 명 > 출생아 수 27.2만 명) 발생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전망

\*국민 생산연령인구(15~64세)는 2020년 3,738만 명 → 2030년 3,381만 명(-357만 명) → 2040년 2,852만 명(2020년 대비 -886만 명)으로 예측(통계청, 2022)



\*출처: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, 2023

- (지역소멸 위험) 2021년 229개 중 108개(47.2%) 시·군·구가 소멸위험 지역, 2047년에는 모든 시·군·구가 소멸위험 지역 예상(국회입법조사처, 감사원, 202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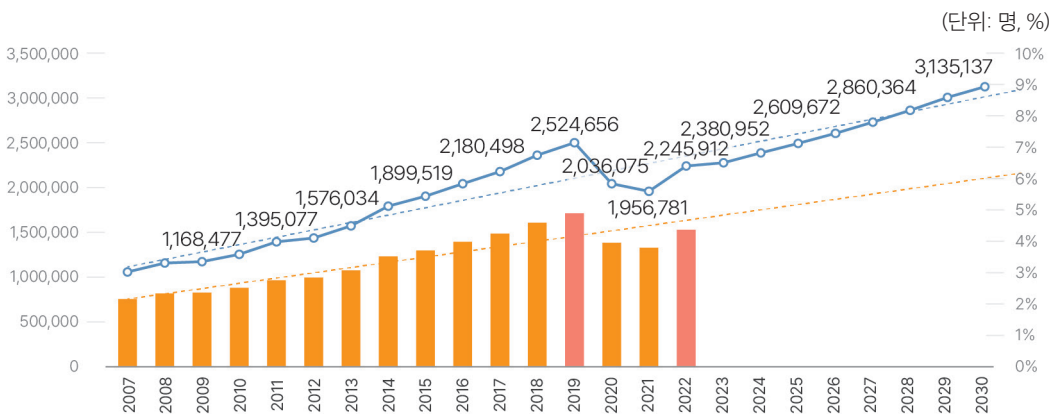
\*출처: 감사원, 감사보고서, 시·군·구별 장래 소멸위험지역,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1(지역), 2021

## ② 이민자 수 증가와 구성 다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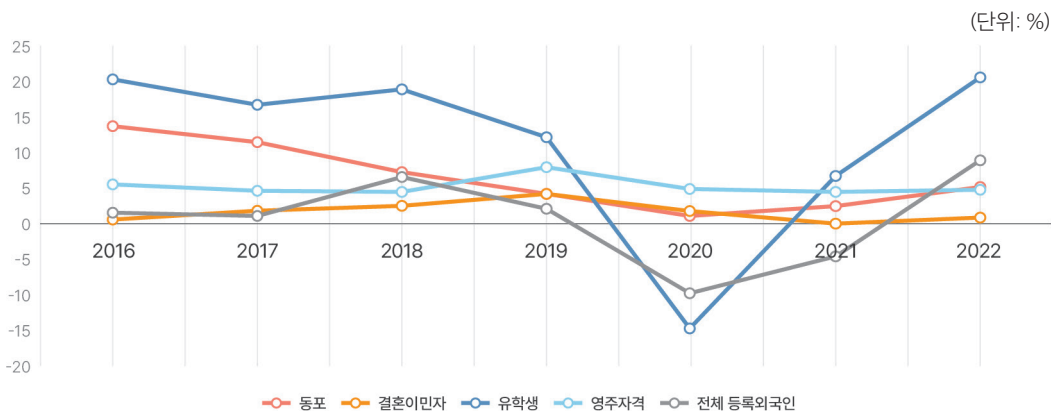
- **(이민자 수 급증)** 2008년 116만 명(총 인구 대비 2.3%)이던 이민자 수는 2019년 252만 명(총 인구대비 4.9%)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2030년 300만 명 초과 예상 (2022년 말 기준 224만 명)  
- 지난 10년간의 이민자 수 증가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빠르게 진행
- **(구성 다변화)** 체류외국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동포, 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, 유학생 및 영주자격자 증가 등 이민자의 구성 다변화 추세

※ 장기 거주 외국인의 국적 구성이 2008년 176개국에서 2022년 192개국으로 다변화

이민자 수·비율 변화 추이 및 예상



장기체류 이민자 증감 추이



\*출처: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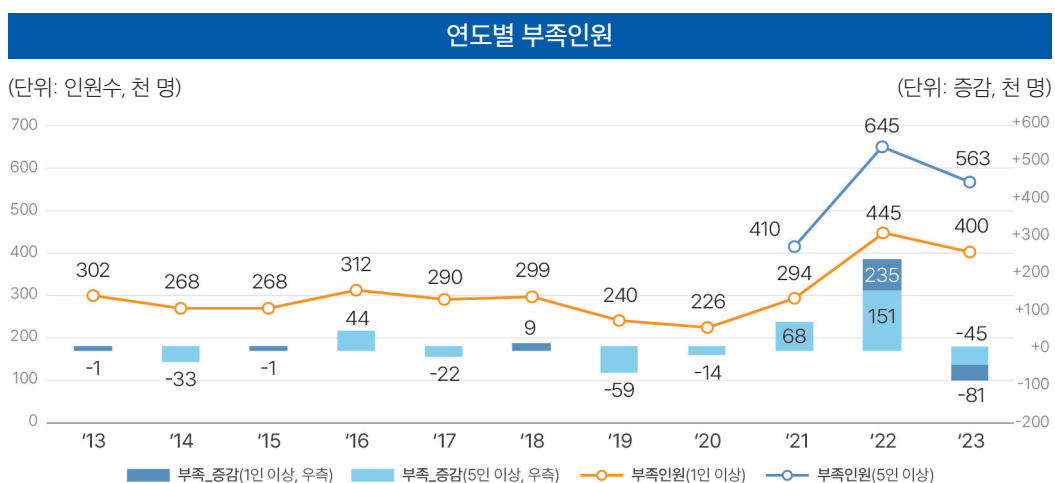


### 3 인력부족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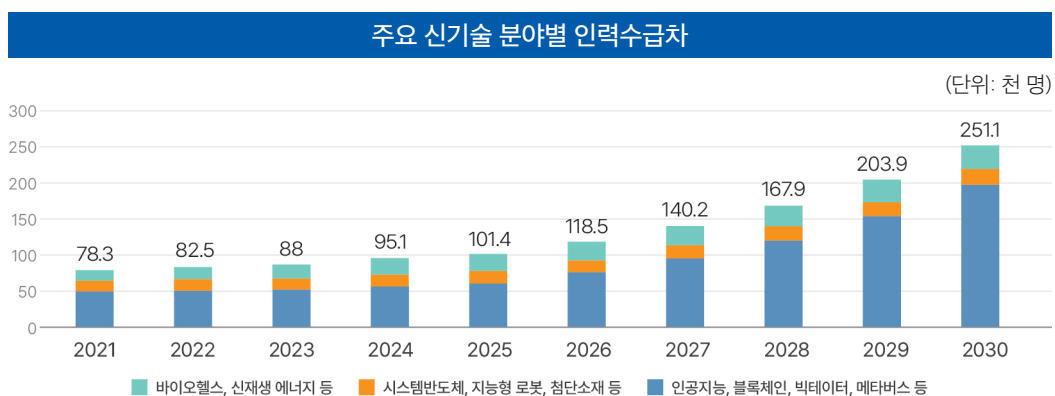
- (산업현장 구인난 심화)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업종과 급여 수준을 불문하고 인력난 확산

- 부족인원은 2013년 30.2만 명에서 코로나19 이후 2023년에는 56.3만 명까지 증가(고용노동부, 2023)

-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“내국인 고용이 어렵기 때문”(90.6%)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, “인건비 절감”을 위해서라는 의견은 3.2%에 불과(중소기업중앙회, 2023)



\*출처: 고용노동부, 2023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



\*출처: 감사원,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(생산인력 확충), 2022

※ (산업별 인력부족) 제조(13.5만 명), 도소매(6.7만 명), 보건·사회복지서비스(6.0만 명)

※ (직종별 인력부족률) 운전·운송직(6.4%), 금속·재료 설치·정비·생산직(5.2%), 제조·단순직(4.9%), 미용·예식 서비스직(4.8%), 식품 가공·생산직(4.7%) 순으로 부족(고용노동부, 2023)

## 인력부족 해소 노력 실태(다중응답)

(단위: 개소, %)

| 인력부족 해소 노력             | 응답수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채용비용 증액 또는 구인방법의 다양화   | 1,169,531 | [58.9] | (37.1) |
| 외국인력활용                 | 115,083   | [5.8]  | (3.7)  |
| 파견 및 용역근로자 활용          | 191,140   | [9.6]  | (6.1)  |
| 임금(급여)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    | 706,554   | [35.6] | (22.4) |
| 재직자의 근로시간(연장 및 휴일근로)확대 | 315,208   | [15.9] | (10.0) |
|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부족한 직무능력 향상 | 115,951   | [5.8]  | (3.7)  |
| 생산설비 자동화 또는 사무자동화 추진   | 48,139    | [2.4]  | (1.5)  |
| 일과 가사를 병행하려는 인력 활용     | 396,772   | [20.0] | (12.6) |
| 기타                     | 93,996    | [4.7]  | (3.0)  |

주 1) [ ]: 총 응답사업체 대비 비율[(응답수/총 응답사업체)×100]

2) ( ): 전체 다중응답수 대비 비율[(응답수/전체 다중응답수)×100]

\*출처: 고용노동부, 2023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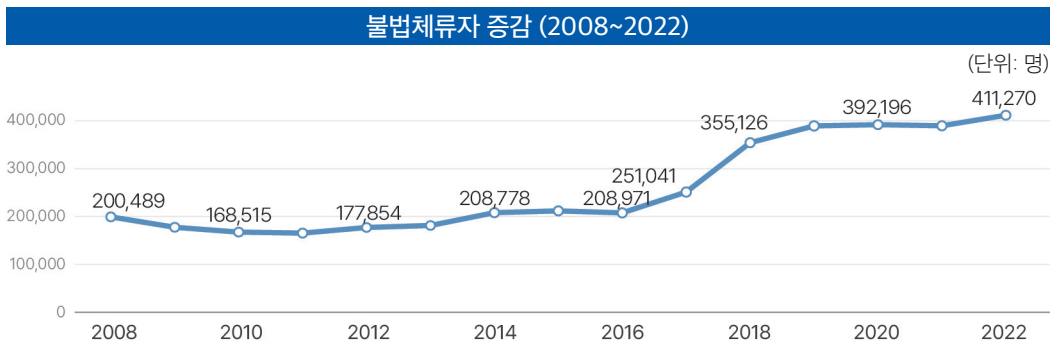
※ 인력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(3.7%) 실제 내국인 고용이 쉽지 않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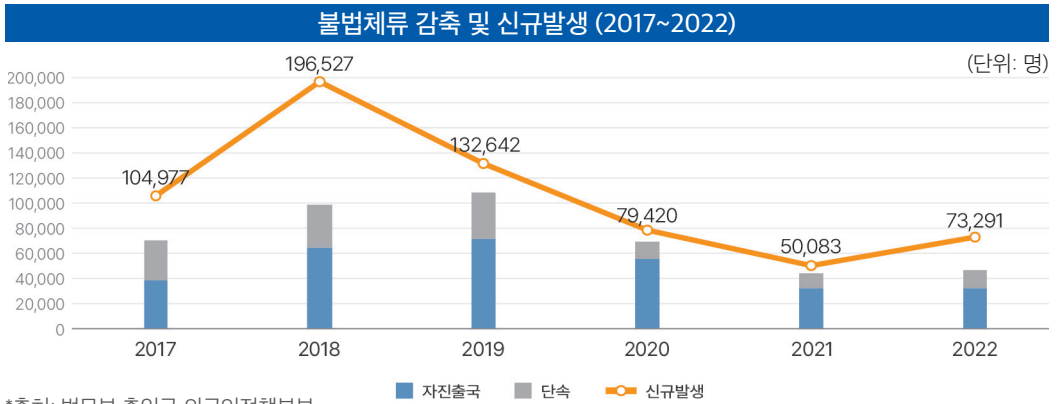
- (신산업·기술인력 수요 증가) 신산업·기술 발달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문·숙련기술 분야의 인력수요 증가
  - 2021~2030년까지 10년 간 신기술 인력수요는 모든 분야에서 관련 학과 대학졸업 인원 (공급)을 초과하며 총 132만 7천 명의 인력수급차를 전망(감사원 감사보고서, 2022)

### 4 체류관리 강화 요구 증대

- (불법체류자 수 증가) 단속인력 부족, 제한적인 집행수단 등으로 불법체류자 증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, 2022.12월 기준 그 수가 41만 명에 도달(체류외국인 전체의 2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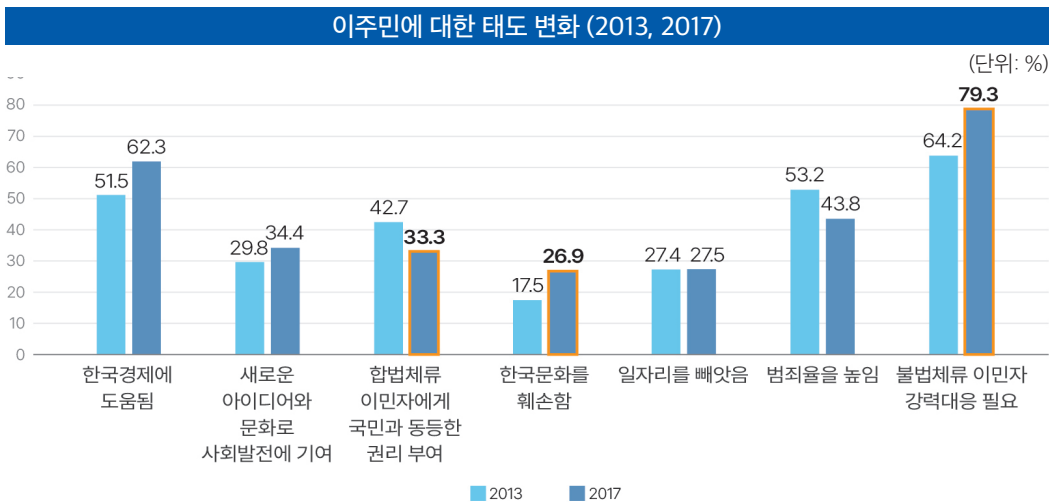
※ (2008~2016년) 20만 명 내외로 유지 ➡ (2017~2022년) 25만 명을 넘어서며 2022년 41만 명까지 증가





※ 관광객 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국문호 확대, 국가 간 임금 격차 등으로 신규발생 증가

- (체류질서 강화 요청) 반이민정서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청이 증가



## 5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

- (이민의 영향) 이민과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으나,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인식도 강화됨
  - 이민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\*이 된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한편, 이민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과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(법무부, 2021)

\*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가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'22년에만 175조3,00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(매일경제, 2023. 5. 10.)

국내 이민자 유입에 대한 국민인식(매일경제, 2023. 5. 10.)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민자 유입                  | 매우 긍정적(5.2%), 대체로 긍정적(34.4%),<br>대체로 부정적(13.7%), 매우 부정적(4.3%) |
| 최근 5년간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    | 긍정적으로 변화(40.0%), 부정적으로 변화(22.7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민자 유입이 경제·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| 긍정적(49.9%), 부정적(32.5%)<br>※ 국민 56%가 이민 활성화에 동의                |
| 이민근로자의 기업활동 기여 정도       | 매우 기여(9.9%), 대체로 기여(61.3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• (이민자 수용) 이민에 대한 국민의견은 점차 분화되는 양상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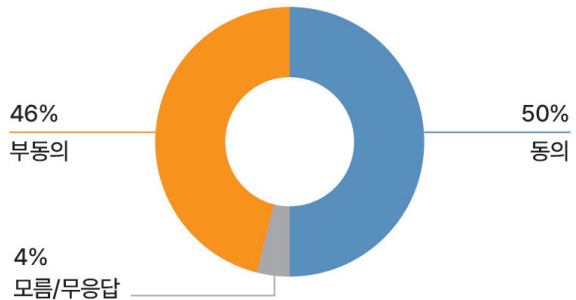
- 저출산·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자 수용 또는 이민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변화

※ ('22.6월) 동의 43 : 부동의 50 → ('22.12월) 동의 50 : 부동의 46 (전국지표조사, NBS)

- 아시아국가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57.2%가 동의하며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(한국리서치, 2022)

이민 활성화에 대한 인식 (2022)

우리나라 저출산 및  
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
노력으로 외국인의  
이민을 활성화해야 한다.



\*출처: 전국지표조사(NBS), 2022년 12월 5주

아시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(2022)

외국인노동자 대폭 수용은 불가피



일자리 뺏기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줄여야



외국인노동자 늘면 사회적 갈등 초래



■ 동의 ■ 모름 ■ 부동의

\*출처: 중앙일보·한국리서치·서울대 아시아연구소, 2022.12.

## ①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민정책 활용 필요

-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향후 20년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충격을 완화·지연하는 보완책으로 활용
  - (구성원 전체의 이익 지향) 외국인정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익과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미래지향적 국가정책임을 인식
  - (지역기반 정책으로 전환)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 이민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-지자체 협력 및 지자체 역량 강화

## ② 유입 및 관리체계 개편 필요

- 이민자 유입단계에서부터 국내 정주 가능성과 사회통합, 인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민자 수와 자격을 결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이민자 유입·관리체계 구축
  - (인재 유치 경쟁력 향상) 산업구조 개편, 주변국과의 전문·기술 인재 유치경쟁에 대응할 체계적 전략을 마련하고, 그 외 문화·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·유인 환경 조성
  - (필수인력의 유연한 관리) 신규 이민자 유입보다는 한국사회 적응력을 갖춘 국내 체류 이민자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, 정주 경로 구축 및 정착 확대로 경제활동인구의 안정적 확보 도모

## ③ 질서있는 체류환경 조성 필요

- 불법체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제1차~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미흡했던 [안전]분야 우선순위를 상향함으로써 질서있고 정교한 체류관리 체계 구축
  - (안전한 국경관리) 경제성장을 위한 관광객 적극 유치 필요성, 팬데믹 재유행 등 긴급상황 발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개방과 안전이 조화되는 국경관리 정책 필요
  - (불법체류 환경억제) 사회질서 위해(危害) 요인의 사전 차단,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“다부처 및 지자체 협력”을 통한 체류관리 체계 구축

※(독일) 이민청, 세관, 경찰, 국경수비대, 노동청 등 기관 협력으로 외국인 불법고용을 감시·적발하고 예방활동을 수행

#### ④ 사회통합 중요성 증대

-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강조하는 일방향적 사회통합에서 더 나아가, **국민과 이민자가 상호 교류**하며 접촉면을 확장하는 **쌍방향 정책 추진**
  - (반이민정서 해소) 이민자에 대한 차별·혐오를 확산하는 거짓 정보에 적극 대응하고, 국민에게 친숙한 미디어를 통해 이민자의 한국사회 기여 등 이민의 순기능 홍보
  - (사회적 배제 방지) 이민자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 발생 시 정책 격차, 복지 사각지대 해소

#### ⑤ 이민행정 인프라 강화 필요

- 생산연령인구 감소, 지역소멸 위기, 이민자 차별과 혐오 등과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**법정부적 협력이 필요**하며 이를 책임감을 갖고 **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추진체계 강화 필요**
  - (전담조직 신설)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이민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협업을 극대화
  - (디지털 기반 이민행정) IT기술·시스템을 이민행정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

# IV

## 비전 및 정책목표

### 비 전

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

### 정 책 목 표

#### 경제

이민을 활용한  
경제와 지역발전 촉진

- ①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
- 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
- ③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
- 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

#### 안전

안전하고 질서있는  
이민사회 구현

- 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
- 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
-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

#### 통합

국민과 이민자가  
함께하는 사회통합

- ①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
-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·소통 증진
-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
- 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

#### 인권

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 
존중하는 사회 실현

- ①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
- ② 여성·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
- 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

#### 협력/인프라

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 
이민행정 기반 구축

-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
-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
-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
- ④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

### 중 점 과 제

# V 제4차 기본계획의 차별성

▲ 최초로 국민참여단(290명)을 구성,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과제로 반영

|       | 1~3차 기본계획(지난 15년) | 제4차 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유입 관점 | ▲ 노동력 충원          | ▲ 우리 사회 구성원<br>▲ 전문·숙련인력 등 다변화 |

- (유입·관리 체계화)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통해 이민자 유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입 분야와 규모를 정하고,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유입관리, 사회통합, 정착·정주를 고려
- (이민정책 활용)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문·숙련인력,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·양성하여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

|       | 1~3차 기본계획(지난 15년) | 제4차 기본계획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정착 방식 | ▲ 적극적 정주 유도 미흡    | ▲ 사회통합, 정착·정주 유도 |

- (사회통합)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
- (체류질서 확립)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법 집행

|       | 1~3차 기본계획(지난 15년) | 제4차 기본계획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추진 체계 | ▲ 단편적·분절적, 중앙 중심  | ▲ 종합적·체계적, 중앙-지방 협력 |

- (추진체계)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,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신설



## 국민참여단

-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국민과 이민자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공론화를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



### ✕ 개요

-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국민 의견을 수렴  
※ 기존 제1차~제3차 기본계획은 전문가(교수, 학자 등), 공무원 의견을 중심으로 수립

### ✕ 구성

- 모집: 2022.6.1.~2022.6.10. 법무부 홈페이지 및 광화문 1번가를 통한 공고
- 자격: 외국인정책에 관심있는 국민·외국인 중 온·오프라인 참여 활동이 가능하신 분
- 선정: 총 290명(남성 165명, 여성 125명)  
※ 50명을 예정하였으나,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신청자 전원을 선정

### ✕ 운영

- 활동기간: 2022.6월~2022.12월  
※ 온라인 회의와 대면 토론회 이외에도 전화·메일을 통해 수시로 의견 수렴
- 온라인 회의('22.8.18.): 296건의 제안서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토론 주제를 선정  
※ 국민참여단 대표 44명 참석(화상회의 개최)
- 대면 토론회('22.10.14.): 국민참여단이 직접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  
※ 국민참여단 대표 20명 참석(장소: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)

### ✕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국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한 과제

- ‘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’ 추진,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
- 외국인의 불법체류 정보수집 체계화,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
-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
-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



Part  
02

## 주요 추진과제

- I.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
- II.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
- III.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
- IV.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
- V.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



# I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

## 주요 추진과제

I-1

###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

- ① 이민자 유입 및 관리 시스템 선진화
- ② 이민자 역량 검증 및 관리 강화
- ③ 고급·숙련 비자체계(트랙) 구축

I-2

###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

- ① 우수·전문 인력 유치 확대 및 육성
- ②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로 산업계 구인난 해소
- ③ 분야별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
- ④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
- ⑤ 창업·투자이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

I-3

###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

- 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참여기반 조성
- ③ 지역사회 중심의 이민자 정책참여 및 인프라 강화

I-4

###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

- ① 관광매력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
- ②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



#### ④ 법무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(법무부)

- 부처 간 상이한 외국인의 성명, 생년월일 등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

### ② 이민자 역량 검증 및 관리 강화

#### ①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(법무부, 외교부)

- 재외공관 사증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관 수요 파악을 거쳐 비자신청센터\* 지속 확대 추진
- \* '22년 12개(7개국) 비자신청센터를 '23년 19개(11개국)로 확대 운영 중
- 사증 접수 및 교부 등 단순 업무는 비자신청센터에 위탁하고, 영사는 허위 초청장 제출, 불법입국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정밀심사 강화

#### ②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(고용부, 중기부)

- 한국어 교과 및 전공 교과(용접 등)로 훈련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송출국에서 훈련을 이수한 인력을 국내 기업에 알선
- 업종별 단체(중소기업협동조합 등)를 통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인력을 송출국에서 양성하여 도입\*하는 방식 확대
- \* 도입 방식 : 기능인력 필요직종(인력부족 정도 등)발굴·수요 파악 ➡ 송출국 현지 훈련(산업인력공단, KOTRA, 업종별 단체 등) ➡ 이수자 선발 ➡ 직종별 신청사업장 배정
- 해외기량검증단의 계획·도입 규모, 항목·과정,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여 송출국 현지 기량 검증의 공정성 제고

### ③ 고급·숙련 비자체계(트랙) 구축

#### ① 해외기술인재 트랙 구축(법무부)

- 이민 희망자의 자격증·경력·학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산업계에 필요한 해외 우수기술인재 (IT, 인공지능(AI), 반도체 등)를 유치하는 트랙 마련

#### ② 국내유학인재 트랙 구축(법무부)

-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·정주할 수 있도록 유학-구직-취업-거주 비자 연계 트랙 신설

### ③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(법무부)

- 단순 노무에 장기간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·경력·학력·연령·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인력(E-7-4) 연간 쿼터를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도록 운영

## I-2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

### ① 우수·전문인력 유치 확대 및 육성

#### ① [국내체류] 우수인재 영주·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(법무부)

- 우수인재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착·지원 서비스 제공 및 영주·귀화 유도를 위한 제도 마련
  -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·박사 학위 취득자가 총장 추천서를 받은 경우 취업 조건 등 없이 거주를 허용하고, 점수제 요건 충족 및 연구실적 우수자에게는 영주·귀화 허가
- ※ 인구감소에 유기적 대응 및 지역 균형 발전 등 고려, 지방거주·근무 가점 부여

#### ② [해외체류]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(과기부, 법무부)

- 우수 해외 연구자(반도체·AI 등 전략기술 분야)를 유치하여 국가 연구경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
  - 박사급 연구자 유치(BrainPool\*, 1~3년), 신산업 분야 정상급 연구자 장기 유치(BrainPool+, 최대 10년)
- \*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, 신성장 동력 확보, 신진 연구인력 양성,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
- 외국인 우수 연구자 대상 사이언스 카드\* 발급 및 우대제도 확대를 통해 전략적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추진

\*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추천서

※ 사이언스 카드 발급 시 장기 체류기간 부여, 가족체류 및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

### ③ [글로벌 최상위 인재]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(법무부, 산업부, 중기부, 과기부)

- 각 분야별(산업계, 벤처·창업계, 연구계) 집중 유치 대상(Top-Tier급)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을 최소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활발한 취·창업, 학업을 전면 허용
-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외국인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
- 첨단산업 우수인재(유학생 포함)를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하고,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

### ④ [글로벌 인재]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(법무부)

- 고소득자 및 첨단기술\* 분야 종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등 일부 제한되는 직종 외에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
-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 대상 첨단기술 분야 인턴비자 신설

\*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(반도체, 바이오, 디스플레이, 신재생에너지 등)

### ⑤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(중기부, 법무부, 교육부)

- 개도국\*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SW분야 교육과정을 제공 후 국내 스타트업으로 취업 연계 추진

\* 우수인력 분포, 불법체류율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 국가 선정



\* 예시 : 베트남 과기부 혁신기업진흥청(NATEC)

※ 중소기업 75.4%가 SW 전문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며, 향후 외국인 SW 인력 채용 의사를 피력한 기업은 54.5%(23.7, 중기부 조사)



## ②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로 산업계 구인난 해소

### ①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(법무부)

-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해 숙련기능인력(E-7-4) 쿼터를 혁신적으로 확대

※ 연간도입 규모 : ('18년) 600명 → ('20년) 1,000명 → ('22년) 2,000명 → ('23년) 35,000명

- 중앙부처 추천 외에 지자체·기업체 추천 도입, 점수제 항목을 실질적 요건 위주로 간소화, 전환 후 일정기간 기존 사업장 근무 의무화 등 제도 개선

### ②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(법무부, 산업부, 농식품부, 고용부, 국토부, 해수부)

-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(E-7-4) 공급 지원을 위해 산업별 별도 쿼터\* 신설 및 점진적 확대 추진

\* 제조업, 뿌리산업, 건설업, 농어업, 조선업 분야 별도 쿼터 운영 중

- 조선업 등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시설 교육기관 연수생(D-4-6)의 E-7 전환 프로그램 신설하고, 조선업체 채용을 전제로 일정기간 현장 교육을 받은 국내대학 졸업 유학생을 취업비자(E-7)로 변경 허용

### ③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(법무부)

- 유학생 졸업 후 구직 허용기간을 늘리고(2년→3년), 취업이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등 취업연계 확대

### ④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(산업부, 법무부)

-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추가 선정, 유학(D-2) → 뿌리산업인력 양성대학 졸업자(E-7) 허용 쿼터와 양성대학 정원 확대 추진

※ 뿌리산업 양성대학교 지정 현황 : ('14년) 3개 → ('17년) 8개 → ('22년) 9개

### ③ 분야별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

#### 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(법무부, 복지부, 고용부)

-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, 가사분야 등 돌봄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돌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를 확대
-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동포에게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부여, 외국인 졸업생(D-10)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, 국내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추진
-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외국인 가사인력 활용 방안 마련 추진

#### ② 농·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(법무부, 농식품부, 해수부)

- 일정기간 농·어업분야에 종사한 계절근로자(E-8)를 대상으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

#### ③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(고용부, 농식품부, 법무부)

- 재외동포(F-4)의 음식점 주방보조원 및 음식서비스 종사원 취업 허용
- 비전문취업(E-9) 인력의 음식점(주방보조원), 임업·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 고용 허용

#### ④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(법무부, 고용부)

- 유학·연수생 적극 활용 등 국내 선발 확대, 해외선발 시 연령·학력·기능 등의 요건을 적용한 점수제 적용 강화 등을 통해 젊고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

#### ⑤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·탄력 대응(고용부, 법무부)

-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·직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(주무부처 협업) 등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 방안 모색
-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(E-9) 입국예정일 안내

#### ④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

##### ①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(교육부)

- (온·오프연계) '한국유학종합시스템'을 활용한 온라인 박람회와 현지 공관 주도 오프라인 연계 박람회 운영, (온라인) 지자체 특화, 전문대 특화, 테마형 박람회 운영
- 유학생 업무담당자(대학, 지자체, 재외공관 등) 의견을 반영한 차세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

##### ②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(법무부, 산업부, 교육부)

- 국내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수요를 파악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'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' 개최 및 취업비자 정보 제공
-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유학생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정보제공 사이트 안내

##### ③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(교육부, 법무부)

- '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'를 신설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-학업-진로설계 전략 수립·이행
-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추진을 통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,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외국인력 수요분야의 유학생 전담학과 운영

##### ④ 국제장학프로그램(GKS) 운영(교육부)

-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, 국가 간 상호이해 증진 및 한국에 우호적인 네트워크 구축
- 아시아 등 주요 협력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·협력 확대로 국내·외 학생의 문화·학문 교류 강화

##### ⑤ 외국인 유학생 학습·적응지원 강화(교육부)

- 권역별 한국어센터\* 운영, 교육 콘텐츠 보급, 입학 초기 이중언어교육 병행, 국내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제공 등 한국어 및 문화이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학업 지원

\* 대학 내 한국어교육 시설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, 지자체 평생 학습시설 등

- 상담센터 운영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·정주 등 한국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 유학에 대한 만족도 및 한국 유학 적응도 제고

## 5 창업·투자이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

### ① 인바운드 창업·취업 지원(중기부, 법무부)

- 전략 국가(미국, 유럽, 동남아 등) 중심으로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, 외국인 창업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효율화를 위해 외국인 창업자DB 구축, K-스타트업 챌린지에 외국인 유학생 전형 신설

※ 발굴·지원 절차: 외국인 창업팀 발굴 → 국내 입국 대상(60개팀) 선정 → 액셀러레이팅 → 데모데이 → 후속지원

- ‘창업이민종합지원프로그램(OASIS\*)’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 개발인재를 육성, 창업기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(E-7) 비자를 발급하고,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검토

\* OASIS(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) : 중기부·법무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 이민센터가 운영하는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지원프로그램

### ②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(법무부)

- ‘부동산 투자이민제도’를 ‘관광·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’로 명칭 변경, 투자기준금액 상향,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

※ 제주, 인천(송도·영종·청라), 부산(해운대·동부산), 평창(알펜시아), 여수(경도) 투자지역 시행 중

- 외국인 창업이민자(D-8-4)에 대한 체류기간을 확대(1년 → 2년)하는 등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투자 유치 촉진

## 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

### ①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(법무부)

-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성과 분석,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정규사업화
-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지역을 선정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
-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

#### ✕ 지역특화형 비자제도

-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·인원 제안 및 지역우수 인재를 법무부에 추천하고 법무부는 거주(F-2) 또는 동포(F-4) 비자를 부여하는 제도('22. 10월 시범사업 시행)
- ※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역 현황(28개) : 부산(3), 대구(1), 경기(2), 충북(2), 충남(2), 전북(6), 전남(6), 경북(5), 경남(1)

### ②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전담기관 설치(법무부)

- MOU 체결 등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도입·관리업무를 지원하고, 지역특화형 비자의 선발 및 인력 부족 분야에 대한 수요 분석 등 지원

### ③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(농식품부, 법무부)

-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\*를 정부 예산사업으로 단계적 확대 운영 ('22년 5개소 → '23년 19개소 → '24년 70개소)
- \* 지자체가 유치한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·관리하면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
-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('24년~)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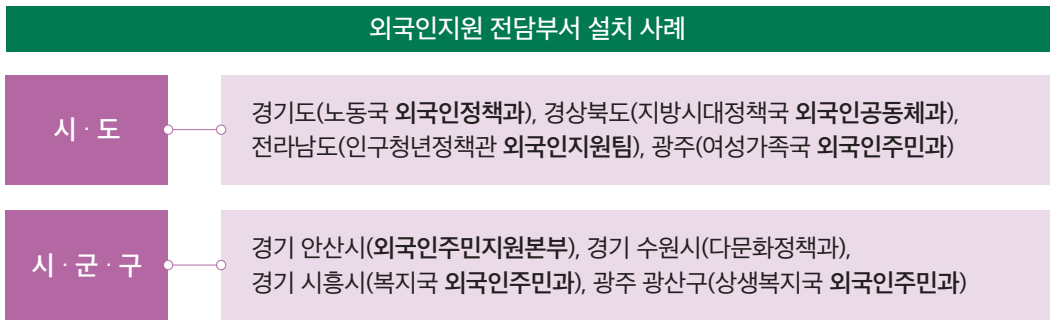
### ④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주민 현황 반영(행안부)

- 「지방자치법」상 인구 인정 기준 및 자치단체 파급효과 등 고려, 기구정원규정상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인구 수에 '외국인'까지 포함
- ※ 지자체 실·국 등 기구설치 인구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('23.6.)

## ②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참여기반 조성

### ①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(법무부)

- 지자체 단위 이민정책 실행력 확보 및 지방 출입국관서와 연계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이민자 거주 지자체에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

### ②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(법무부)

-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-지방협력실무분과위원회 개최 시 지자체의 참여를 촉진하고, 과제 안건 발굴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확대

### ③ 중앙-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(법무부)

- 업무 담당자별(계절근로, 사회통합 등) 분임토의, 지자체 사례발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정책 개선방안 도출

※ 중앙·지자체 외국인정책담당자 워크숍 분기별, 권역별 개최

### ④ 중앙-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(법무부)

- 계절근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관련 종합 정보 제공, 행정업무 처리,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에 활용

### ③ 지역사회 중심의 이민자 정책참여 및 인프라 강화

#### 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(행안부)

-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의 운영 내실화, 지역 특성에 따라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(치안봉사대) 활동 장려 등 외국인주민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활동하도록 기회 보장

#### ②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(법무부)

- 지역별인구, 외국인분포, 취학 연령대, 외국인 유학생 학교·전공 분포, 산업별 외국인 고용, 지역간 이동 등을 분석하고 지도·그래프 등으로 시각화

#### ③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(법무부)

- 사회통합교육·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대외기관 및 이민자의 상담창구를 이민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단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기반 마련

#### ④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(법무부, 행안부)

-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, 전문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하여 지역사회 이민자 통합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
-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민정책 수립·시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단계적 실행방안과 우수사례 및 성과 등이 포함된 '외국인 업무 지원 가이드북\*' 작성 및 배포

\* 외국인대상 주요 서비스 제공자인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지역 거주 외국인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외국인업무 안내서

## I-4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

### ① 관광매력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

#### ① K-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(문체부)

- 한류 콘텐츠 관련 이벤트·거점을 연계한 새로운 콘텐츠 확충으로 K-컬처 팬덤을 방한 관광객으로 유치, 한류 유관기관·지자체·민간의 한류 관심층 협업체계 강화

#### ② 크루즈 관광 활성화(문체부, 해수부)

- 크루즈 관광제도 개선을 통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, 크루즈 목적지 홍보마케팅 및 상품 개발·홍보

- 지속적인 Port Sales\* 활동 및 시장 다변화 추진, 크루즈 관광체험단 및 방송 홍보 지속 추진

\* 선사·화주에게 항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활동

#### ③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개선(법무부)

- 다국어 서비스 구축, 유효기간 연장(2년→3년), 청소년(17세 이하) 및 고령자(65세 이상) 적용 제외, 단체신청 인원 확대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

#### ④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(법무부)

- 동남아 일부 국가의 인센티브·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단체 전자비자를 일반 관광객까지 확대하여 해외관광객 유입 기대

#### ⑤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(법무부, 문체부)

- 전자사증 발급기간 단축 등 전자사증 수요 확대에 신속 대응을 위한 온라인체류·사증민원센터 확대·신설 추진
- ‘2023~2024 한국방문의 해’ 추진, 청와대 K-관광 랜드마크화, 지역관광콘텐츠 발굴 등 K-관광 수출 활성화 뒷받침을 위한 전담부서로 ‘관광수출전략추진단(2년 한시조직)’ 운영



## ②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

### ① (가칭) K-컬처 비자 신설(법무부)

- K-콘텐츠 연수를 받으려는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‘(가칭) K-컬처 비자’를 신설하여 우리 대중 문화에 대한 연수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 산업 발전 도모

### ② 워케이션\*(디지털 노마드\*\*) 비자 신설(법무부)

-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 비자를 신설하여 국내 관광 경제 활성화에 기여

\*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

\*\* 첨단기술(digital)과 유목민(nomad)의 합성어.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공간제약 없이 재택·이동 근무하며 자유롭게 근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

### ③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(복지부, 법무부, 문체부)

- 전자비자 신청 혜택이 있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확대, 의료관광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제도 개선
- 유치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·사후관리 활성화를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 제고,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및 나눔 의료,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한 위상 강화
-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웰니스·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

※ 세계 의료관광 시장은 '25년 240조 원(1,820억 달러)으로 연평균 9.7% 성장 전망(Glasgow Research & Consulting Report, '22.8월)

## II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

### 주요 추진과제

II-1

####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

- ① 불법체류 관리체계 고도화
- ② 다부처 분야별 차별화된 책임 강화
- ③ 불법체류 단속 역량 강화 및 제도 정비

II-2

####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

- ① 질서있는 체류환경 구현
- ② 체류질서 위반 예방조치

II-3

####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

- ① 국경안전 대응체계 구축
- ② 항만 국경관리 내실화



## II-1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

### ① 불법체류 관리체계 고도화

#### ① ‘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’ 추진(법부처)

- 불법체류 반감(半減) 추진('23년~'27년(5개년), 41만 명 → 20만 명대), 상시 정부합동단속 체제 유지('23년~) 및 집중단속기간 시행, 관계부처 실무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한 협업 강화

#### ②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(법무부, 외교부, 고용부, 국세청)

- 국가별 불법체류율 등 이민질서 위반 현황에 따라 ‘보통, 관심, 주의, 경계’ 4단계 대응방안에 의한 부처별 대응

※ **보통** 예방환경 조성, 불법체류 현황 공개 등 **관심** 주한공관 협조 강화, 합동단속 실시 등

**주의** 주한공관과 사증면제협정 중단 관련 협의, 자진출국 홍보 강화

**경계** 사증면제협정 중단 및 고용허가제 신규인력 배정 시 반영 등

### ② 다부처 분야별 차별화된 책임 강화

#### ①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(법무부, 외교부)

- 불법체류 감소(신규 유입 차단, 자진출국 홍보)를 위한 주한외국공관과 간담회 개최 및 이민연락관 현지 파견 확대

#### ②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(고용부)

- 근로계약 체결 위반·최저임금법 위반 등 근로감독관 수사 활성화,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장 정보의 부처 간 공유 활성화

#### ③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(국세청)

-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 등에 제출한 자료를 출입국관서와 공유하도록 하여 불법고용 이득 차단(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)

※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원천징수 신고 위반 등 세무 감독 강화

#### ④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(경찰청)

- 외국인밀집지역 전담 인력을 통해 공공안녕 위험요인 발굴·해소,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강화, 외사치안협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민·관·경 협력체계 구축

#### ⑤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(국토부)

- 건설협회를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 절차 규정에 대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

#### ⑥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(법무부, 경찰청)

- 유흥·마사지 업소, 배달대행 등 민생침해 분야 및 테러 혐의, 대포차 운행,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 외국인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류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

### ③ 불법체류 단속 역량 강화 및 제도 정비

#### ① 외국인의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(법무부)

-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취업 홍보·정보 제공 등 알선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수사\* 강화

\* 이민특수조사대의 전문 사이버 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하여 불법취업 홍보·정보제공에 따른 알선까지 일련의 과정 전반을 수사

#### ②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(법무부)

-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수사·송치 인력 확보,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

#### ③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(법무부)

-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출입 및 조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

#### ④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(법무부)

-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및 외국인 보호시설의 적정인력 배치, 강제퇴거 집행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

### ① 질서있는 체류환경 구현

#### 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(법무부)

- 국내에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영주자격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

#### ② 상설협의체 구성 등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(국세청)

- 외국인의 출국으로 인한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·법무부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세금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·처리에 관한 연계 시스템 구축

#### ③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(복지부)

-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을 규정하여 의료목적 입국 방지 추진(법률 개정 필요)

※ 배우자·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자격 취득 가능

#### ④ 귀화 면접심사 개선(법무부)

- 변화된 환경과 세계시민의 가치를 반영한 면접심사 문항 지속 개발, 귀화 민간면접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보수교육 강화

#### ⑤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(법무부)

- 국민·재외동포 등 수요자 중심의 국적 법령 정비, 재외공관 국적 업무 편람 정비, 재외공관 국적 설명회 개최

## ② 체류질서 위반 예방조치

### ①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(국토부)

-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상시 단속 및 추가 기획조사 실시, 토지·비(非)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동향분석 및 기획조사 병행 추진
- 매수인(외국인)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·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,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(또는 국내거소신고)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개선

### ②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(경찰청)

-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 확대, 협력단체(외국인 자율 방범대·외국인 치안봉사단) 운영 활성화

## II-3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

### ① 국경안전 대응체계 구축

#### ①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(법무부)

- 각종 출입국 정보 등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국자에 대한 사후 분석 강화를 통한 정밀 심사대상자 선별
- 입국심사 업무 및 정보 활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자 입국신고서를 도입하여 입국자 정보 분석 강화

#### ②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시스템 고도화(법무부)

- 입국 규제자, 불법체류 고위험군 등 국익 위해(危害) 우려자의 사전 차단과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도입 등 시스템 고도화

### ③ 안전 위해(危害)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(법무부)

- 마약·성폭력 등 사회적 파장이 크고, 재범률이 높은 특정 범죄에 대해 입국금지기간 상향 등 입국규제 강화

### ④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(질병청, 법무부)

-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입국심사와 검역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항만 국경관리의 효율성 강화

## ② 항만 국경관리 내실화

### ①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(법무부)

- 항만의 출입국 직접심사 방식 확대, 선박 승선검색 및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감시정 신조 설계 및 건조 추진

### ②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(해수부, 해경청)

- 보안시스템(침입탐지장비 등) 설치·운영 기준 강화(사후 적발·대응 → 사전 감지·예방 체계), 밀입국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(QR) 기반의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전환
- 항만을 통한 밀입국 등 범죄단속 및 첩보수집 강화를 위한 수사전담반 운영, 국제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테러 발생 대응능력 향상 및 관계기관 협조 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

# Ⅲ

##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

### 주요 추진과제

Ⅲ-1

####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

- ①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환류시스템 구축
- ② 유입과 통합을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체계화

Ⅲ-2

####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·소통 증진

- ① 상호 소통기회 확대 및 다양화
- ② 문화다양성 이해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

Ⅲ-3

####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

- ① 이민자 자립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
- ② 이민자 기초생활 적응 지원
- ③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성장 지원

Ⅲ-4

####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

- ① 경제적 자립과 기여를 위한 동포 체류제도 개선
- ② 동포의 사회적응 및 국민과의 유대감 증진
- ③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차세대 동포 육성



### III-1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

#### ①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환류시스템 구축

##### ①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(법무부)

- 사회통합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활용,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예산 효율성 제고

※ (국내 입법례)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상생협력법」 등 다수 법률에 관련 지수의 산정과 공표, 환류에 관한 사항을 명시

##### ② 이민자 사회통합지수\*를 활용한 정책컨설팅(법무부)

- 지역사회에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여 개선 방향 제시

\* 체류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

#### ② 유입과 통합을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체계화

#####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(법무부)

- 이수 의무화 대상을 정주 가능성이 높은 장기체류자 자격으로 확대, 일정 단계 이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정주형 체류자격 변경허가(거주 또는 영주) 혜택 부여

※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거주, 영주 등 장기체류자격 거주기간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'패스트트랙' 제도 도입

#####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(법무부)

-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유형별, 교육단계별로 점진적 유료화 추진, 학습 의욕 및 교육 효과를 높이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책임성 증진, 유료화 재원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질적 개선

#####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(법무부)

- 온·오프라인 쌍방향적 접근을 통해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

#### ④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(법무부)

-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자(계절근로자, 재정착난민 등)와 교육시간을 확대하고, 중도입국자녀, 유학생 등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수 의무화 또는 혜택 확대를 단계적 추진
-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

### Ⅲ-2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·소통 증진

#### ① 상호 소통기회 확대 및 다양화

##### ①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(법무부, 여가부)

-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이민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주, 유관기관 관련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협업을 통한 소통 지향적 프로그램 개발
- 연령별·대상별 온·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및 유관 교육기관에 이해교육 콘텐츠 확산

상호문화 이해 교육 기준(유럽연합 집행위원회)

| 영역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언어적 지원        | ① 언어능력평가, ② 언어교육, ③ 지속적인 언어지원<br>④ 체류국 언어를 제2언어로 가르치게 하는 교사 연수, ⑤ 모국어에 가치 부여     |
| 학업적 지원        | ① 포괄적인 수용 체제, ② 학생 발달 점검과 평가, ③ 예방 프로그램, ④ 재통합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부모 및 공동체의 참여 | ① 이민 학부모 지원, ② 이민 학부모에 정보 제공, ③ 이민 학부모의 봉사과 권한 부여,<br>④ 이민공동체 자원 활용, ⑤ 협의와 경험 공유 |
| 상호문화교육        | ① 우호적 학습 환경조성, ② 교사 대상 다양성 연수 실시, ③ 이주배경 교사 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# ②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(법무부)

-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행사 개최, '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'에 지자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국민과 이민자 간 소통·교류 활성화

### ③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(법무부)

- 국민과 이민자의 친밀감 형성과 긍정적 경험 공유를 위해 이민자의 자원봉사 활동과 재능기부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 및 이민자 참여형 대국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 활동 개발

## ② 문화다양성 이해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

### 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 기반 마련(문체부)

-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내 인식 변화 등 법정 실태조사\*를 통한 정책환경 분석 및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으로 활용

\* (문화다양성법 시행령 제8조)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, 문화 향유 및 창조 활동에서의 다양성, 문화다양성 보호·증진을 위한 시설·자원·인력,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

### ②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(문체부)

-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 대국민 특별강연, 문화다양성 콘텐츠(도서·음반·영화 등) 추천 전시, 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### ③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(문체부)

- 아동·청소년 및 성인 등 생애주기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, 초·중·고 교원 연수 운영 및 교재 개발·배포, 방송종사자·문화기관 종사자 등 전문인력 대상 교육 활성화

### ④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(교육부)

- 학교 구성원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 확대 실시

### Ⅲ-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

#### ① 이민자 자립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

##### ①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(고용부)

- 결혼이민자 중 취·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‘국민내일배움카드’ 발급, 적합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비(45% ~ 85%) 지원 및 훈련장려금 지급, 직업훈련 과정 신설 추진

##### ②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(여가부, 농식품부)

-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, 자립 지원 등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
- 농업·농촌 진로체험·상담 및 농촌 주민과의 소통프로그램 운영, 농업종사 의지가 있는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 대상 기초 농업이론 및 실습교육 등 실시

##### ③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(문체부, 법무부)

-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정착과 통합 촉진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(교재, 학습콘텐츠 등 포함)을 개발하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활용

#### ② 이민자 기초생활 적응 지원

##### ①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(고용부)

- 외국인근로자(E-9)의 도입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

##### ②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(방통위)

-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재난·재해 시 대응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

##### ③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(방통위)

-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방송 콘텐츠 제작 개선 및 안전을 위한 재난속보 방송체계 개선 등 재난대응요령 안내

※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제주 중심으로 진행(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4.8%)

#### ④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(법무부, 복지부)

-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복지기준 불명확 및 체류외국인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체류자격에 따른 복지기준의 설정 및 지원 방안 마련

※ 60세 이상 체류외국인은 '12년 전체 외국인 대비 7.31%에서 '22년 11.08%로 약 16만 명 증가

### ③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성장 지원

#### ①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(교육부)

- 이주배경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언어·기초학습 지원

#### ②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(교육부, 법무부)

- 중도입국·외국인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·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
- 공교육 진입 유도를 위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

#### ③ 학업·진로·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(여가부, 교육부)

-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의 영유아기 언어발달, 취학 전후 기초학습 및 청소년기 상담, 진로설계 지원,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
-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 컨설팅 및 대학생을 활용한 한국어·기초학습 및 진로·진학 상담 지원

### III-4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

#### ① 경제적 자립과 기여를 위한 동포 체류제도 개선

##### ①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(법무부)

- 동포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중국·고려인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(F-4) 자격부여 확대 등 동포 체류자격 통합 추진

##### ②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(법무부)

- 인구감소에 따른 구인난 해소를 위해 방문취업(H-2) 및 재외동포(F-4) 취업활동 범위 점진 확대
  - 취업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서민 일자리 보호 방안 마련
- ※ 단순노무 허가제 도입, 분담금 부과를 통한 기금 마련 등

##### ③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(법무부)

- 수도권에 밀집된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동포 및 배우자의 취업 범위 확대

#### ② 동포의 사회적응 및 국민과의 유대감 증진

##### ①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(법무부)

- 동포체류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의 법적 근거 마련,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지정, 성공적으로 정착한 동포 우수 사례 발굴

※ (동포 체류지원센터 지정 현황) '21년 7개 → 11개, '23년 16개로 확대

##### ②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(법무부)

- 미주, 대양주, 유럽, 아시아 등 권역별 동포 특성을 반영한 통합형 출입국행정서비스 안내서 제작

##### ③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(법무부, 재외동포청)

- 재외동포 인식 정립 및 동포정책 이해를 위한 홍보·언론대응, 초·중·고교·대학교로 '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' 확대

### ③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차세대 동포 육성

#### ① 4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강화(법무부)

- 동포로서의 기본소양을 체류자격 부여·변경·연장 등과 연계하여 한국어 학습 유도
- ※ 모든 동포로 범위 확대 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 증가

#### ②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(법무부)

- 일정 연령 미만 아동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(F-4) 체류 자격 부여, 동포 유학생의 영주 신청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, 한인 입양동포 2세대의 동포입증 서류 간소화

#### ③ 동포 청소년 민족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(법무부)

- 국내 체류 동포 3·4 세대인 청소년에게 한국어교육 및 참여형 민족성 제고 프로그램 제공,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이미지 개선으로 국내 정주 가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유도

# IV

##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

---

### 주요 추진과제

IV-1

####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

- ① 이민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
- ② 인도적 차원의 법 집행 인프라 확대

IV-2

#### 여성·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

- ①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 체류·교육권 보장
- ② 폭력·인신매매 등 이민자 인권 사각지대 예방

IV-3

#### 국제 위상에 부합한 인도적 의무 이행

- ① 균형 잡힌 난민정책 추진
- ②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
- ③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·협력 강화





## ① 이민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

### ①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(고용부)

- 외국인 고용허가(E-9, H-2) 사업장에 대한 숙소 실태 및 최저임금,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도·점검 강화

\*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·점검 중 불법 고용 확인 시 출입국·외국인관서 통보

### ②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(고용부)

- 외국인 여부 및 체류자격의 차별 없이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,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(E-9) 전용보험제도 운영,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

### ③ 재난·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(행안부)

- 국민재난안전포털(Safekorea.go.kr) 영문 홈페이지 운영, Emergency Ready App를 통한 대피소 정보 제공과 영어·중국어 재난 문자 발송

### ④ 편견·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(방통위)

- 방송사 심의 책임자 회의를 통해 차별적 방송관련 심의규정 및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방송사 자체 심의 기능 강화 적극 유도

## ② 인도적 차원의 법 집행 인프라 확대

### ①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(법무부)

- 소송제기 등으로 공항 내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해 별도의 출국대기소 마련

### ②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(법무부)

- 개방형 시설 시범운영 결과 및 해외사례\*를 참고, 기존 보호시설 개선

\* (스웨덴) 보호외국인들은 공용공간을 자유롭게 이용, (프랑스) 시설 내 야외공간을 낮 동안 또는 하루 종일 자유롭게 이용 가능 등

### ③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(법무부)

- 「출입국관리법」을 개정하여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의신청, 보호기간 연장 등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심사 방안 마련 추진

## IV-2 여성·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

### ①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 체류·교육권 보장

#### 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(법무부)

-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화, 출생등록번호 부여를 통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

#### ②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(경찰청, 여가부)

- 학교폭력 등 대응 시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, 다문화 학생 등의 진술 기회 확보를 위해 가족센터의 다문화 상담사, 통번역지원사 등 참여 추진
- 가족센터와 협업하여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, 다문화 학생 수 많은 경찰서는 다문화 학생 담당 학교폭력전담경찰관(SPO) 지정·운영

#### ③ 세계시민교육 제고(교육부)

-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, 자유, 연대 등을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민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및 지속적 확산
- ※ 「2015 세계교육포럼」 개최를 계기로 한국이 제안한 세계시민교육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(SDG), 유네스코 교육 개발목표로 채택

### ② 폭력·인신매매 등 이민자 인권 사각지대 예방

#### 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(여가부)

-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긴급 상담 및 쉼터 연계, 이주여성·자녀를 위한 의료·법률, 주거, 직업훈련 등 제공

## ②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(법무부)

-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\*의 활용도를 높이고, 실적제출·담당자 교육·통계 관리 등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참여

\* 인신매매 등 피해자의 신속·정확한 발견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국제기준에 맞게 제작한 지표

## IV-3 국제 위상에 부합한 인도적 의무 이행

### ① 균형 잡힌 난민정책 추진

#### ①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(법무부)

- ‘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’ 시행 등을 통한 우수 통역인 후보군 확대, 난민전담공무원, 난민(전문) 통역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 평가·관리

#### ② 출입국향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(법무부)

- 출입국향 난민심사 담당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, 항만 난민심사 거점기관 지정 및 난민신청자 대기장소(시설) 마련

#### ③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·전문성 보장(법무부)

- 이의신청 진행경과 조회·알림 시스템, 의견청취 확대, 유엔난민기구(UNHCR)와의 공동 교육 등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

#### ④ 국가정황정보 수집·관리 체계 고도화(법무부)

- 주변국 정세 불안 등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국가정황정보를 신속하게 수집·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\* 구축

\* 해외 국가정황정보 자료 번역사업, 국가정황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

## ② 난민의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

### ①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(법무부)

- 난민인정자·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통합 정책을 개발하고, 국민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난민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

### ② 난민의 처우개선(법무부)

- 인도적체류자의 체류자격 개편, 멘토링 프로그램, 심리치료, 관계부처·지방자치단체·시민단체 협력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,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난민신청자의 조기 취업허가 등
-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난민에 대한 기본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
## ③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·협력 강화

### ①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(법무부)

- 재정착난민 수용사업의 정규화, 수용 규모, 대상\* 등 다변화, 재정착난민의 생활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

\* 아·태지역 및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국제 분쟁지역에서 재정착난민을 수용하되,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결정함

- 민관 협력하에 학생 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 시범 도입, 관계기관, 민간단체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학생 난민의 안정적 정착 및 지원 방안 마련

### ②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(법무부, 외교부)

- 유엔난민기구(UNHCR) 집행이사회, 글로벌난민포럼(GRF), 재정착난민에 관한 3자 간 연례회의(ATCR) 등 난민 관련 주요 국제 논의 적극 참여
- 난민 글로벌 콤팩트(Global Compact on Refugee)\*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공약 발굴 및 이행

\* GCR :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난민수용국가 부담 경감, 난민의 경제적 자립 증진, 제3국 정착 방안에 대한 접근 확대 등이 핵심 목표

# V

##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

### 주요 추진과제

V-1

####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

- ①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편
- ② 부처 간 이민행정 협력 강화

V-2

####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

- ① 이민행정 전문가 양성
- ② 이민정책 분야 민간 협력 강화

V-3

####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

- 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외국인 편의 제고
- ② 디지털·데이터 기반 이민행정 추진

V-4

####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

- ①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
- ② 이민정책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활용

## V-1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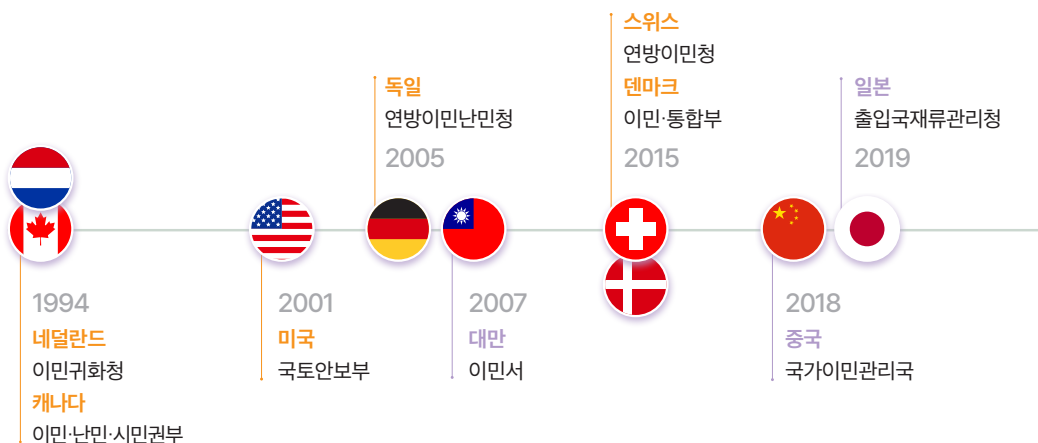
### ①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편

#### ① 출입국·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(법무부)

- 생산연령인구 감소, 지역소멸 등 변화된 정책환경에 대응하여, 국익의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‘(가칭)출입국·이민관리청’ 신설

※ 불법체류, 외국인 범죄 등 외국인 유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출입국·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세미나 및 국민 의견 수렴

#### 해외 이민정책 전담조직



#### ②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(법무부)

-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을 ‘(가칭)이민정책 기본법’으로 전면 개정, 한국형 이민정책 수립의 법적 기반 마련

- 부처별로 운영되는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간 협력 강화 및 위원회 통합 운영방안 검토 등 실효적인 정책조정 체계 확립

## ② 부처 간 이민행정 협력 강화

### ①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(분과)위원회 운영 활성화(법무부)

- 이민자 비자, 체류, 쿼터, 인력수급 등에 대한 장·단기 관리방안 논의, 중앙·지방협력 실무분과위를 통한 지자체와 소통·협력 강화

### ②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(법무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고용부)

-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분야 확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운영상황 점검, 개선안 발굴

## V-2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

### ① 이민행정 전문가 양성

#### ①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(법무부)

- 사회통합 전문인력\*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회통합 전문인력별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시 실습과목 확대

\*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,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, 구술시험관, 통합시민교육 강사, 다문화사회 전문가, 이민자 멘토단 등

-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통합 관련 업무 담당자 채용 시 사회통합 전문인력 채용 협력 추진

#### ②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(법무부)

-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재판과정 등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특수언어 및 소수언어 통역인을 양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역인 교육 실시
- 인증시험 참여율이 저조한 소수언어의 외국 국적 통역인 등은 체류 우대 혜택 등을 조건으로 교육 참여 유도

### ③ 공무원(출입국관리직) 시험과목 개편(법무부)

- 출입국관리직 시험과목 중 직무 연관성이 낮은 국제법을 출입국관리법·국적법·난민법 등 외국인정책 관련 법령·제도를 총칭하는 ‘이민법(학)’으로 변경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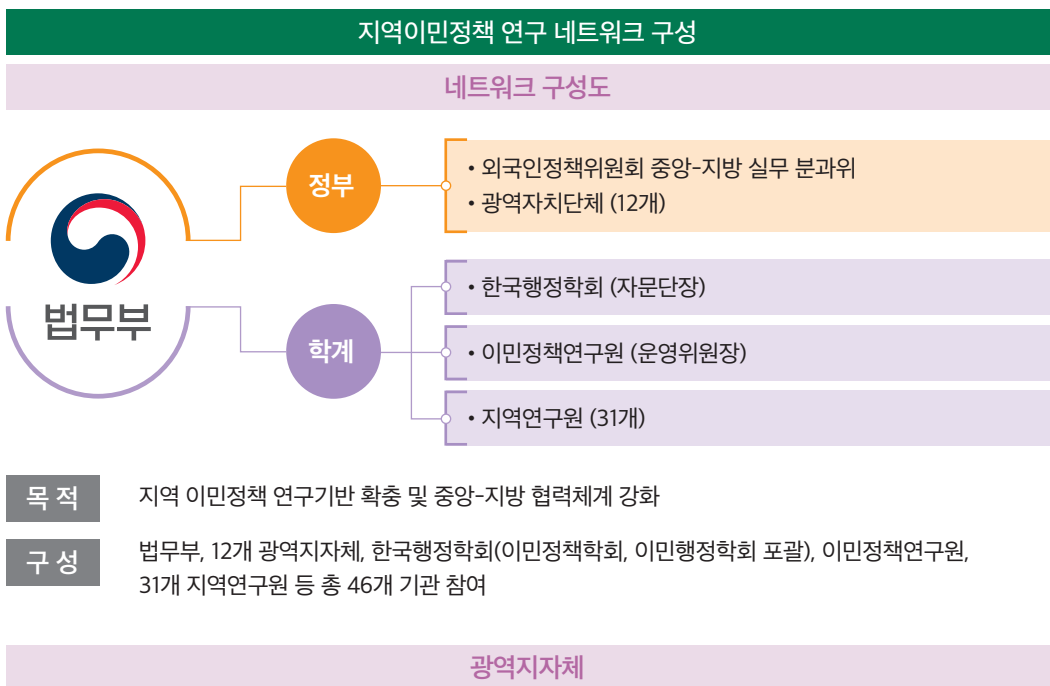
## ② 이민정책 분야 민간 협력 강화

### ①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(법무부)

- 시·도 단위로 지방 출입국관서와 ‘(가칭)지역이민 주민위원회’를 구축, 광역단위 이민정책 수요 발굴 및 자문, 국민적 공감대 형성

### ② 민-관-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(법무부)

- 민간활동가, 지역연구원, 지역대학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협력하여 이민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포럼, 간담회 등 개최
-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-지방-학계-연구계 협력 플랫폼인 ‘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’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연구 결과의 정책화 지원





| 지역연구원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권역        | 지역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울·경기·인천권 |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, 경기연구원, 경기도여성가족재단, 고양시정연구원, 서울여성가족재단, 서울연구원, 수원시정연구원, 용인시정연구원, 인천여성가족재단, 인천연구원, 한국지방행정연구원 |
| 대전·충청권    | 대전세종연구원,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, 충남연구원, 충북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주·전라권    | 광주여성가족재단, 광주연구원, 전남연구원, 전북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구·경북권    | 경북여성정책개발원, 경북연구원, 경상북도 가족센터, 대구정책연구원,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산·울산·경남권 | 경남연구원,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, 울산북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, 창원시정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강원        | 강원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주        | 제주여성가족연구원, 제주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③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(법무부)

- 이민정책 개발 역량 강화 및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이민정책 연구 책임 수행, 유연한 조직 운영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

- 미래지향적 이민정책 연구발굴을 위한 국내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운영 지원

※ 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에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(‘23.7)

### ④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(법무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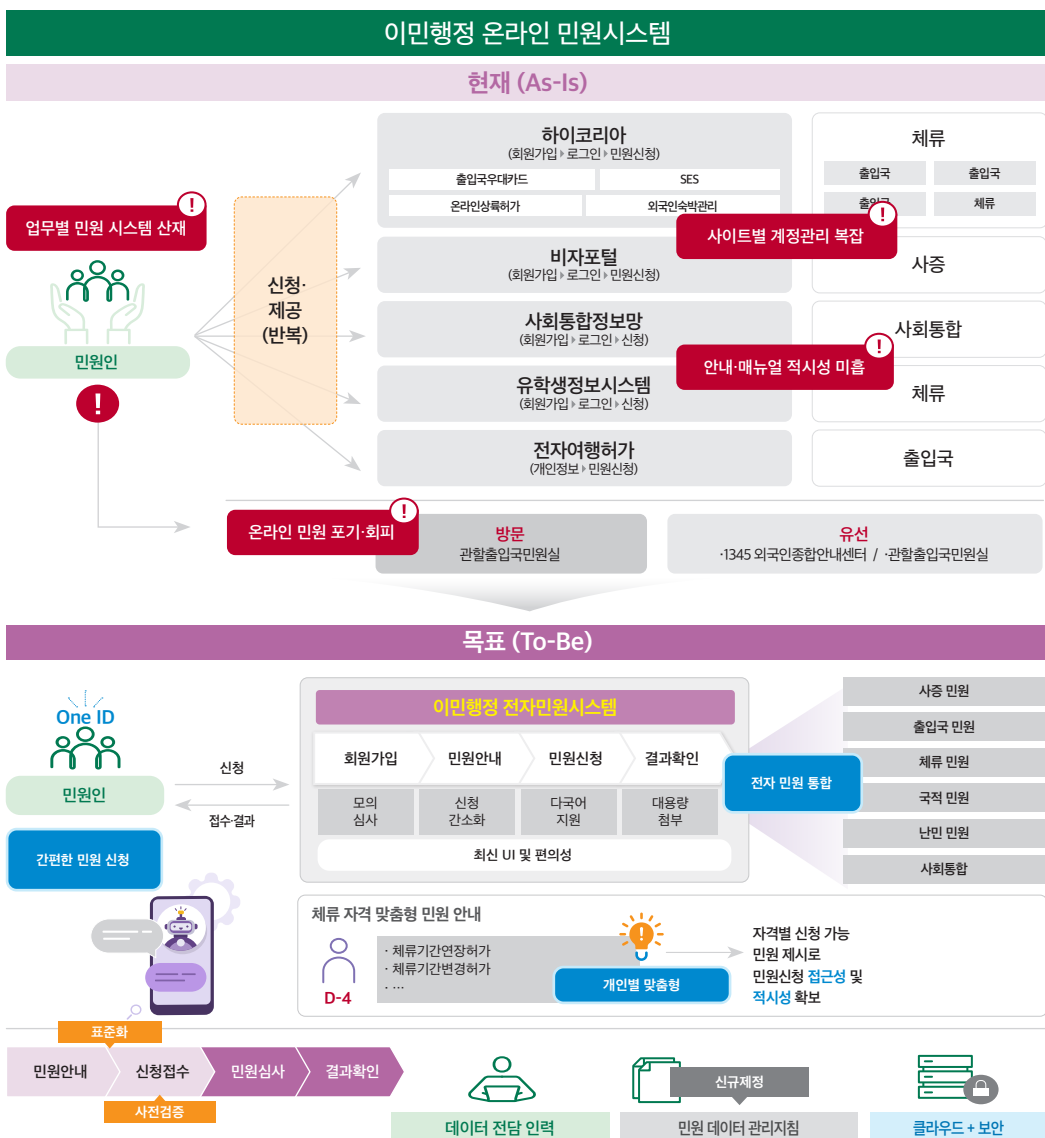
-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, 법조계,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이민정책 비전,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 및 정책제언 수렴

## V-3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

### 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외국인 편의 제고

#### ①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(법무부)

- 사증신청, 출입국관리, 체류 서비스, 사회통합까지 현행 방문중심 민원시스템을 온라인 기반으로 통합하여 본인인증 강화, 시스템 접근 편의 촉진 및 정보관리 효율성 제고
- 다국어 지원 확대, 전자화된 제출서류 자동 검증, 온라인 전자매뉴얼 구축으로 외국인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 신속 제공



## ②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(법무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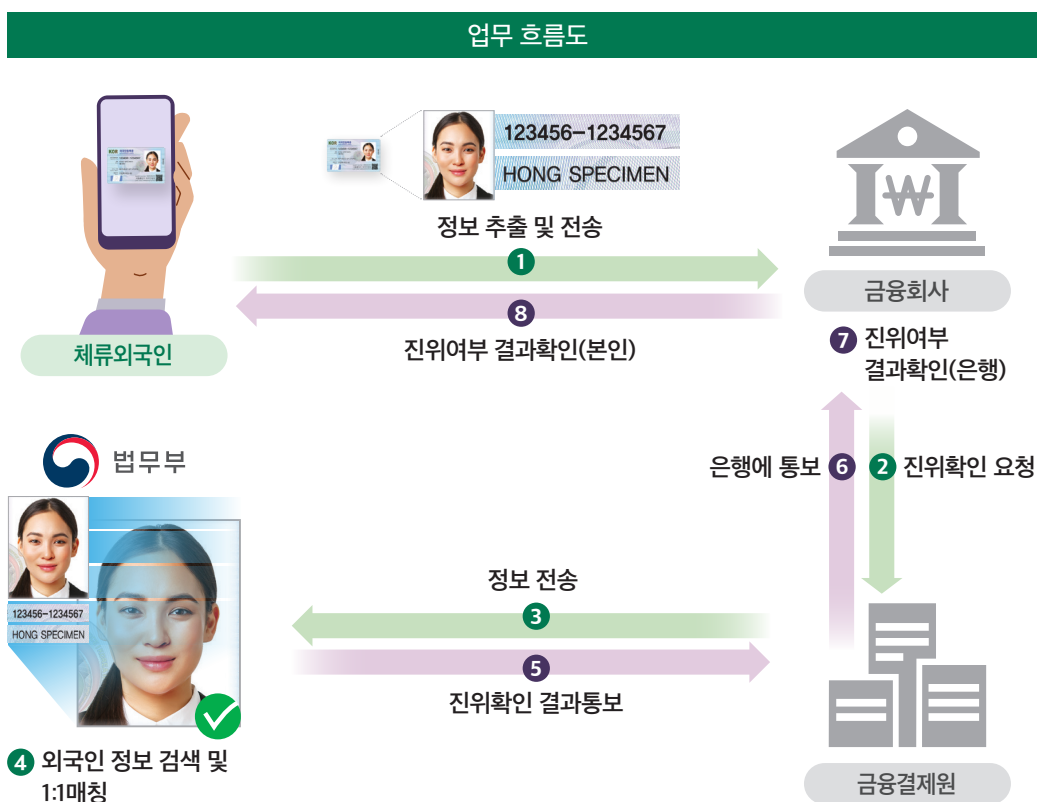
- 온라인 화상교육, 온오프라인 융합교육, 이러닝, 온라인평가 시스템 등 도입 등 새로운 종합플랫폼 구축
- 모바일 사이트 개설 및 앱을 개발하여 교육 신청부터 교육 수강까지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

## ③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(법무부)

- 디지털 기반 외국인 신분증 도입을 통한 실물 신분증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 보완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
- 국가 모바일 신분증 도입 정책에 외국인을 포함하여 디지털 불평등과 소외감 차단 및 온라인 본인인증 활용을 통한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

## ④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(법무부)

- 등록외국인이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행



## ② 디지털·데이터 기반 이민행정 추진

### ①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(법무부)

- 지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·연령·성별, 지역별 외국인 방문 추이 등의 분석자료를 지자체·관광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- ※ '21년 전자여행허가(K-ETA)제도 도입으로 외국인의 입국목적 및 체류지 등 디지털화 가능,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이후 전체 외국인 입국자 대상으로 분석 확대 예정

### ②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(통계청, 법무부)

- 시의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한 내·외국인 인구추계주기 단축,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개선 및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반영
- 등록센서스\*를 통해 국내 상주외국인(체류기간 3개월 초과) 통계 및 모집단 정보 매년 제공
- \* 가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부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인구·가구·주택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

## V-4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

### ①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

#### ①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(법무부)

- 행안부, 외교부, 고용부 등 관련 부처 및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중요 추진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GCM 국가이행보고서 작성 및 이행점검 회의 참석
- ※ GCM(Global Compact for Safe,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) : 세계 각국이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첫 합의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협력체계

#### ②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(법무부)

-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(ELSAC) 산하 이주작업반(Working Party on Migration)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이주 관련 연구 및 각국의 국제이주정책에 대한 자료 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

### ③ 유엔대테러실(UNOCT) 업무 공조(법무부)

- 유엔대테러실과 정보 교류를 통해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여 테러 대비태세 강화, 엑스포·올림픽 등 국제행사 시 대테러 등 국경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공유

### ④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(법무부, 외교부)

- 이민 관련 국제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이민 당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

## ② 이민정책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활용

### ① 이민과 개발(Migration & Development)의 정책화(법무부, 외교부)

- 순환 이민(수원국 인재양성 → 이주 → 본국 귀환)을 통해 한국, 송출국(정부, 이주 당사자)의 개발·성장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 추진

프로그램 개념도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원국(송출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(유입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주당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부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순환이주<br>(Circular migration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삼중이득<br>(Triple Win)         | 1. 개인 역량개발<br>2. 직업 선택 기회 증대<br>3. 임금 증대 | 1. 송금액 증가<br>2. 숙련 인력 증대 | 1. 노동 부족 문제 해결<br>2. 지방불균형 문제 해결<br>3. 인재 유입 |

※ '22.8.18(목) 진행된 '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온라인토론회'에서 국민참여단 역시 '공적개발원조(ODA) 협력국가 중심의 외국인 유치'를 의견으로 제시

### ② 출입국 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(법무부, 외교부)

-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현지 공항공사·이민청 등과 협력하여 출입국행정(Hi-korea) 등 개발협력 프로그램 제공



Part  
**03**

## 부 록

1.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
2. 재원 투자 규모
3.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

**1.**

**정책과제별  
주관부처 현황**



# I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

| 추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             | 추진시기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<b>I-1.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</b>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b>❶ 이민자 유입 및 관리 시스템 선진화</b>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고용부               | '23~'25 |
| ② 수요자 중심의 비자체계 정비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'23~'27 |
| ③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'23~'25 |
| ④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'24~'27 |
| <b>❷ 이민자 역량 검증 및 관리 강화</b>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비자신청센터 확대를 통한 재외공관 사증심사 전문성 강화   | 법무부  | 외교부               | '23~'27 |
| ② 취업이민자 역량향상을 위한 송출국 현지 훈련 및 관리 강화 | 고용부  | 중기부               | 매년      |
| <b>❸ 고급·숙련 비자체계(트랙) 구축</b>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해외기술인재 트랙 구축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'24     |
| ② 국내유학인재 트랙 구축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'24~'27 |
| ③ 숙련기능인재 트랙 구축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'23~'27 |
| <b>I-2.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</b>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b>❶ 우수·전문인력 유치 확대 및 육성</b>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[국내체류] 우수인재 영주·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'23~'27 |
| ② [해외체류]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            | 과기부  | 법무부               | '23~'27 |
| ③ [글로벌최상위인재]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 확보        | 법무부  | 산업부<br>중기부<br>과기부 | '24     |
| ④ [글로벌인재] 첨단기술 분야 비자제도 개선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'23~'24 |
| ⑤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       | 중기부  | 법무부<br>교육부        | '24~'27 |

| 추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진시기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<b>②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로 산업계 구인난 해소</b>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및 제도 개선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3     |
| ②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산업부<br>고용부<br>농식품부<br>국토부<br>해수부 | '23~'27 |
| ③ 유학 후 취업연계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~'27 |
| ④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치 확대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부  | 법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3~'27 |
| <b>③ 분야별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경제성장 기여</b>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복지부<br>고용부                       | '23~'27 |
| ② 농·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 마련           | 법무부  | 농식품부<br>해수부                      | '24     |
| ③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력 허용 확대 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| 농식품부<br>법무부                      | 매년      |
| ④ 필수산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편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고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3~'27 |
| ⑤ 산업현장 인력 수요에 신속·탄력 대응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| 법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년      |
| <b>④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</b>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     |
| ②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산업부<br>교육부                       | '24~'27 |
| ③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           | 교육부  | 법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     |
| ④ 국제장학프로그램(GKS) 운영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년      |
| ⑤ 외국인 유학생 학습·적응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년      |
| <b>⑤ 창업·투자이민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</b>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인바운드 창업·취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 중기부  | 법무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~계속  |
| ② 외국인 투자이민 정책의 합리적 조정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     |

| 추진 과제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| 추진시기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
### I-3.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

#### ① 지역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
| ①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| 매년  |
| ②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지원 전담기관 설치 | 법무부  |     | '24 |
| ③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                   | 농식품부 | 법무부 | 매년  |
| ④ 행정기구 설치 시 외국인주민 현황 반영           | 행안부  |     | '23 |

#### ②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참여기반 조성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----|
| ①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부서 설치근거 마련   | 법무부 |  | '23~'27 |
| ② 외국인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활성화     | 법무부 |  | 매년      |
| ③ 중앙-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류 강화   | 법무부 |  | 매년      |
| ④ 중앙-지방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| 법무부 |  | '25     |

#### ③ 지역사회 중심의 이민자 정책참여 및 인프라 강화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
| 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 기회 확대    | 행안부 |     | '23~'27 |
| ②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| 법무부 |     | '23~'27 |
| ③ 지방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   | 법무부 |     | '24~'27 |
| ④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            | 법무부 | 행안부 | '24     |

### I-4.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

#### ① 관광매력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
| ① K-컬처 융합형 관광프로그램 발굴            | 문체부 |     | 매년      |
| ② 크루즈 관광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| 문체부 | 해수부 | 매년      |
| ③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개선             | 법무부 |     | '23~'27 |
| ④ 단체 전자비자제도 확대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|     | '23     |
| ⑤ 방한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| 법무부 | 문체부 | '24~'25 |

#### ②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|
| ① (가칭) K-컬처 비자 신설 추진   | 법무부 |            | '24 |
| ② 워크케이션(디지털 노마드) 비자 신설 | 법무부 |            | '24 |
| ③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       | 복지부 | 법무부<br>문체부 | 매년  |

## II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

| 추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             | 추진시기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<b>II-1.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</b>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b>① 불법체류 관리체계 고도화</b>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‘목표지향적 불법체류 감축 계획’ 추진         | 범부처  |                   | ’23~’27 |
| ②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            | 법무부  | 외교부<br>고용부<br>국세청 | 매년      |
| <b>② 다부처 분야별 차별화된 책임 강화</b>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대응 강화           | 법무부  | 외교부               | ’23~’27 |
| ② 근로감독 강화 및 고용주 계도              | 고용부  |                   | 매년      |
| ③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     | 국세청  |                   | ’24~’27 |
| ④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                | 경찰청  |                   | 매년      |
| ⑤ 건설현장 불법체류 감축 지원               | 국토부  |                   | ’23~’25 |
| ⑥ 민생침해 및 국민안전 위협 분야 단속 강화       | 법무부  | 경찰청               | ’23~’27 |
| <b>③ 불법체류 단속 역량 강화 및 제도 정비</b>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외국인의 불법취업 정보수집 체계화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’23~’27 |
| ② 브로커 적발을 위한 이민특수조사 역량 강화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’23~’27 |
| ③ 사업장 출입 조사권 신설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’25~’27 |
| ④ 출입국사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’23~’27 |
| <b>II-2.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</b>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b>① 질서있는 체류환경 구현</b>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영주제도 개편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’24     |
| ② 상설협의체 구성 등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 | 국세청  |                   | ’24     |
| ③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      | 복지부  |                   | ’24     |
| ④ 귀화 면접심사 개선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’23~’27 |
| ⑤ 국적법령 정비 및 제도 홍보 강화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| ’23~’27 |

| 추진 과제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| 추진시기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
## ② 체류질서 위반 예방조치

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---|
| ①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   | 국토부 |  | '23~계속 |
| ② 준법교육 등 외사치안활동 전개 | 경찰청 |  | 매년     |

## II-3.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

### ① 국경안전 대응체계 구축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
| ① 엄정한 국경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심사 강화                 | 법무부 |     | '23~'27 |
| ②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여행허가(K-ETA) 시스템 고도화 | 법무부 |     | '24     |
| ③ 안전 위해(危害)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|     | '24     |
| ④ 입국심사와 검역절차 협조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| 질병청 | 법무부 | 매년      |

### ② 항만 국경관리 내실화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
| ① 실질적 승선검색 확대로 항만 보안 강화 | 법무부 |     | '23~'27 |
| ②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          | 해수부 | 해경청 | 매년      |

### III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

| 추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| 추진시기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<b>III-1.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</b>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<b>① 이민자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환류시스템 구축</b>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①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4~'27      |
| ②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3~'27      |
| <b>② 유입과 통합을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체계화</b>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및 혜택 확대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4~'27      |
|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의 책임성 확보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3~'27      |
|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및 국민 인식 제고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3~'27      |
| ④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운영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4~'27      |
| <b>III-2.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·소통 증진</b>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<b>① 상호 소통기회 확대 및 다양화</b>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①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여가부  | '24~'27      |
| ② 국민과 이민자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 확대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매년           |
| ③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3~'27      |
| <b>② 문화다양성 이해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</b>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 기반 마련   | 문체부  |      | '24~<br>매 2년 |
| ②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         | 문체부  |      | 매년           |
| ③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                 | 문체부  |      | 매년           |
| ④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|      | 매년           |
| <b>III-3.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</b>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<b>① 이민자 자립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</b>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 ①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|      | 매년           |
| ②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| 여가부  | 농식품부 | 매년           |
| ③ 국내 체류 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              | 문체부  | 법무부  | '24~'27      |

| 추진 과제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| 추진시기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
## ② 이민자 기초생활 적응 지원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
| ① 이민자 직장생활 상담 창구 강화         | 고용부 |     | 매년      |
| ②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 | 방통위 |     | 매년      |
| ③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제작 | 방통위 |     | 매년      |
| ④ 체류유형별 복지 기준 마련            | 법무부 | 복지부 | '24~'27 |

## ③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성장 지원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
| ①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               | 교육부 |     | 매년 |
| ②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       | 교육부 | 법무부 | 매년 |
| ③ 학업 · 진로 · 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| 여가부 | 교육부 | 매년 |

## Ⅲ-4.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

### ① 경제적 자립과 기여를 위한 동포 체류제도 개선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----|
| ①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               | 법무부 |  | '23~'27 |
| ②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            | 법무부 |  | 매년      |
| ③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| 법무부 |  | '23     |

### ② 동포의 사회 적응 및 국민과의 유대감 증진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
| ①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   | 법무부 |           | '23 |
| ②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  | 법무부 |           | '23 |
| ③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인식 및 이해 개선 | 법무부 | 재외<br>동포청 | 매년  |

### ③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차세대 동포 육성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----|
| ① 4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능력 강화   | 법무부 |  | '24     |
| ②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    | 법무부 |  | '24     |
| ③ 동포 청소년 민족성 제고 프로그램 확대 | 법무부 |  | '23~'27 |

## Ⅳ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

| 추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| 추진시기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
| <b>Ⅳ-1.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</b> |      |      |         |
| <b>① 이민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</b>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①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|      | 매년      |
| ②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 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|      | 매년      |
| ③ 재난·재해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                  | 행안부  |      | '23~'27 |
| ④ 편견·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             | 방통위  |      | 매년      |
| <b>② 인도적 차원의 법 집행 인프라 확대</b>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①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3~'27 |
| ②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3~'27 |
| ③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5     |
| <b>Ⅳ-2. 여성·아동 등 취약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</b> |      |      |         |
| <b>①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 체류·교육권 보장</b>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4~'27 |
| ②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| 경찰청  | 여가부  | 매년      |
| ③ 세계시민교육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부  |      | 매년      |
| <b>② 폭력·인신매매 등 이민자 인권 사각지대 예방</b>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                 | 여가부  |      | 매년      |
| ②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 강화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매년      |
| <b>Ⅳ-3. 국제 위상에 부합한 인도적 의무 이행</b>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<b>① 균형 잡힌 난민정책 추진</b>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①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매년      |
| ② 출입국항 난민심사 절차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4~'25 |
| ③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·전문성 보장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3~'27 |
| ④ 국가정황정보 수집·관리 체계 고도화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3~'27 |



| 추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| 추진시기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
| <b>②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 구축</b>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① 실태조사를 통한 증거기반의 난민정책 추진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4~'25 |
| ② 난민의 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매년      |
| <b>③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·협력 강화</b> |      |      |         |
| ①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매년      |
| ②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외교부  | 매년      |

## V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

| 추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              | 추진시기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<b>V-1.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행정 추진체계 구축</b>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b>①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편</b>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출입국·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'23~'25 |
| ②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'24~'25 |
| <b>② 부처 간 이민행정 협력 강화</b>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실무(분과)위원회 운영 활성화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매년      |
| ②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농식품부<br>해수부<br>고용부 | 매년      |
| <b>V-2.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</b>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b>① 이민행정 전문가 양성</b>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사회통합 전문인력 역량 내실화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'23~'27 |
| ② 소수언어 통역인 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'24~'27 |
| ③ 공무원(출입국관리직) 시험과목 개편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'23~'27 |
| <b>② 이민정책 분야 민간 협력 강화</b>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광역 이민협력 거버넌스 구축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'23~'27 |
| ② 민-관-학 합동 연구 기반 마련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'23~'27 |
| ③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매년      |
| ④ 이민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매년      |
| <b>V-3.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</b>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b>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외국인 편의 제고</b>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①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'26~'27 |
| ② 사회통합교육 종합플랫폼 구축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'27     |
| ③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'24     |
| ④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              | '23     |

| 추진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관부처 | 협조부처 | 추진시기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
| <b>② 디지털·데이터 기반 이민행정 추진</b>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①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분석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3~'27 |
| ②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               | 통계청  | 법무부  | 매년      |
| <b>V-4.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</b>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<b>① 이민 관련 국제협력 확대</b>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①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'23~'27 |
| ②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매년      |
| ③ 유엔대테러실(UNOCT) 업무 공조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     | 매년      |
| ④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부  | 외교부  | 매년      |
| <b>② 이민정책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활용</b>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
| ① 이민과 개발(Migration & Development)의 정책화 | 법무부  | 외교부  | '24~'27 |
| ② 출입국분야 우수행정을 활용한 ODA 협력 강화            | 법무부  | 외교부  | '23~'27 |

**2.**

## **재원 투자 규모**

## 재원투자 규모

**2023~2027년 중 총 투자규모는 약 2조 3,701억원으로 추계\***

- 「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」 분야 1조1,183억원(47.2%),
- 「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」 분야 75억원(0.3%)
- 「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」 분야 1조992억원(46.4%)
- 「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」 분야 1,124억원(4.7%)
- 「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」 분야 326억원(1.4%)

연도별 투자 계획

(단위 : 억원)

| 구분        | 연도       | 계         | 2023     | 2024     | 2025     | 2026     | 2027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총계        |          | 23,701.88 | 3,233.17 | 4,323.4  | 4,910.59 | 5,410.41 | 5,824.31 |
| 국비        | 일반회계     | 11,856.84 | 1,683.92 | 2,043.67 | 2,422.13 | 2,724.38 | 2,982.74 |
|           | 특별회계     | 386.84    | 19.53    | 71.97    | 80.93    | 104.28   | 110.13   |
|           | 기금       | 10,070.54 | 1,322.86 | 1,912.56 | 2,112.33 | 2,286.55 | 2,436.24 |
|           | 소계       | 22,314.22 | 3,026.31 | 4,028.2  | 4,615.39 | 5,115.21 | 5,529.11 |
| 지방비       |          | 1,387.66  | 206.86   | 295.20   | 295.20   | 295.20   | 295.20   |
| 기타 (민자 등) |          | - 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 -        |
| 추진분야별     | 경제       | 11,183.99 | 1,616.47 | 1,881.31 | 2,288.72 | 2,581.43 | 2,816.06 |
|           | 안전       | 75.03     | 2.32     | 23.25    | 4.82     | 22.32    | 22.32    |
|           | 통합       | 10,992.04 | 1,386.67 | 2,128.67 | 2,328.84 | 2,497.65 | 2,650.21 |
|           | 인권       | 1,124.38  | 179.70   | 192.44   | 232.24   | 248.78   | 271.22   |
|           | 협력 / 인프라 | 326.44    | 48.01    | 97.73    | 55.97    | 60.23    | 64.50    |

\* 재원투자 규모는 재정여건, 예산편성,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### **3.**

## **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**

#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

## (약칭: 외국인처우법)

[시행 2024. 4. 25.] [법률 제19742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법무부(외국인정책과) 02-2110-4116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한외국인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2. “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”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결혼이민자”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

제5조(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)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,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4.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
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,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업무의 협조)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(이하 “공공기관장”이라 한다)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외국인정책위원회)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,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
3.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
4.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2.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
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
제9조(정책의 연구·추진 등)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,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,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재한외국인,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
  2.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
  3.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
  4.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,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
  5.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
  6.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
-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

제10조(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, 대한민국의 제도·문화에 대한 교육,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,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7. 23.>

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31.>

제13조(영주권자의 처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(이하 “영주권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,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·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.

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.

제14조(난민의 처우) ① 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2. 10.>

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의2(특별기여자의 처우)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

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이하 “특별기여자등”이라 한다)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, 「난민법」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
2. 고용 정보의 제공,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

[본조신설 2022. 1. 25.]

제15조(국적취득 후 사회적응)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제16조(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·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의 처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(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,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·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

제18조(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·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, 홍보,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세계인의 날)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,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.

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보칙

제20조(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)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,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법무부장관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·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·번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0. 24.>

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10. 24.>

[제목개정 2023. 10. 24.]

제21조(민간과의 협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2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,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·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2(이민정책연구원) ① 「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」의 이행을 장려하고,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·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·연구·자문·정보교환
2.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
3.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·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·지원
4.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
5.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·정기간행물·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·보급
6.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
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 4. 18.]

제23조(정책의 공표 및 전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·질서유지·공공복리·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부칙 <제19742호, 2023. 10. 24.>**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

The 4<sup>th</sup>  
Master Plan for Immigration Policy

발행일 2024. 2.  
발행처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 
연락처 Tel. 02-2110-4113 / Fax. 02-2110-0378

디자인·인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(주) 02-2285-5278